

온라인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School Cyberbullying

(학교 인터넷따돌림)

실태와 대책방안

일시 | 2014년 11월 3일(월) 13:50~16: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신관 2층)

주최 | 새누리당 국회의원 윤재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후원 | 교육부·경찰청



국회의원 윤재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 개회사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4대악 척결을 위한 노력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황폐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극단적 선택까지 초래했던 ‘학교폭력’은 교육부, 경찰청,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간히 이어지는 학교폭력에 따른 자살 소식을 접할 때면 아직까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점진적인 발달로 인해 학생들의 교우관계 형성 수단으로 ‘면대면 접촉’보다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법이 학생들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현재, 인터넷과 SNS활용이 가장 활발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상의 폭력과 따돌림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의 새로운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교 내 ‘인터넷 따돌림(Cyberbullying)’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 마련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학교 인터넷따돌림(School Cyberbullying)’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터넷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고견을 모아서 우리 청소년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인터넷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국회의원 윤재옥

I 환영사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본원과 윤재옥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학교 인터넷따돌림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사이버불링 등 청소년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윤재옥 의원님과 함께 하게 돼 더욱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윤재옥 의원님과 오늘 귀중한 발표와 토론, 사회를 맡아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급속히 확산되면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이버불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카카오톡을 통해 여러 명의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등 집단따돌림을 당해 아파트에서 여고생이 투신자살한 사건도 있었고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선진국의 경우에도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불링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면에서 청소년들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본원 조사결과 청소년의 27.7%가 사이버불링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19.4%는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10~30%가 사이버불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불링은 우리사회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올해 연구한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이용실태결과를 발표하고 여러 전문가들과 더불어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청소년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애쓴 본원 직원들과 윤재옥 국회의원실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11월 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 축 사

학교 인터넷따돌림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윤재옥 의원님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과 발제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학교 내 폭력이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바탕이 되고,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된다는 의미에서 온·오프라인 학교 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다행히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노력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숨어든 학교폭력은 아직까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해답을 찾아가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뜻 깊은 이번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학교 인터넷따돌림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활발하게 개진되길 기대합니다.

새누리당도 학교폭력과 학교 인터넷따돌림 근절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김 무 성

• 온라인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School Cyberbullying(학교 인터넷따돌림) 실태와 대책방안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4년 11월 3일(월) 13:50~16: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신관 2층)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3:50-14:10(20분)	■ 개회식 ▷ 개회사: 윤재옥(국회의원) ▷ 환영사: 노 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 축 사: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14:10-14:40(30분)	■ 주제발표 ▷ 발표: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실태 및 특성
14:40-15:40(60분)	■ 지정토론 ▷ 좌장: 안동근(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토론 1. 오성배(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2. 조지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3. 김봉섭(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역기능대응부 부장) 4. 조주은(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5. 김승혜(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부장) 6. 진달용(Simon Fraser University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15:40-15:50(10분)	■ 질의응답
15:50-16:00(10분)	■ 폐회식 ▷ 폐회사: 윤재옥(국회의원)

목 차

❖ 주제발표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실태 및 특성	1
-------------------------	---

■ 발표 : 이 창 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토론

1. 학교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책방안에 관한 토론	49
-----------------------------------	----

■ 오 성 배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2.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	57
----------------------------	----

■ 조 지 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	65
-------------------------------------	----

- 사이버불링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 김 봉 섭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역기능대응부 부장)

4. “School Cyberbullying(학교 인터넷따돌림) 실태와 대책방안”에 대한 토론	71
--	----

■ 조 주 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5.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대응방안	83
--------------------------	----

■ 김 승 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부장)

6. 캐나다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실태 및 대책	89
--------------------------------	----

■ 진 달 용 (Simon Fraser University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주제발표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실태 및 특성

이 창 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 및 특성¹⁾

이 창 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사이버불링이 청소년들 사이에 번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톡스토리를 통한 따돌림 현상인 일명 ‘카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동아일보, 2013. 3. 7) 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채팅을 하는 이른바 ‘반톡’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집단적으로 욕을 하거나 놀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다양한 앱 이용이 가능하면서 채팅서비스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멤버십에 기반을 둔 연결망에서 사이버불링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이창호·이경상, 2013). 특히 사이버불링을 견디지 못한 일부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흔히 사이버불링은 사이버따돌림이나 사이버폭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타인에 대한 위협이나 괴롭힘을 일컫는 용어이다 (Patchin & Hinduja, 2011, p. 728). 근래 들어서는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불링이 성행하고 있다. 타인의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몰래 찍어 유포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일명 ‘도촬’(몰래 촬영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앱들도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조희정, 2014). 사이버불링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는 달리 사이버공간을 통해 발생한다는 면에서 물리적, 신체적 폭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즉 면대면 상황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영향 또한 오프라인 폭력 못지 않게 심각하다. 이처럼 사이버불링은 오프라인 폭력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폭력과도 매우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즉 물리적, 신체적 폭력을

1) 본 연구는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고유과제 ‘청소년 사이버불링실태 및 대응방안연구’의 일부분을 정리한 것임.

당한 피해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을 통해 가해자를 괴롭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기기가 진화하면서 사이버불링의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추세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은 사이버불링의 새로운 유형으로 사이버비방, 이미지 불링, 사이버따돌림, 안티카페 등 12가지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사이버불링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는 2012년 3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사이버따돌림²⁾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이버불링피해신고방법이나 대응요령 등 사이버불링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대응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피해 응답률은 2012년 9.1%에서 2013년 1.9%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전체 폭력 중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3%에서 2013년 9.7%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교육부, 2013. 11. 29).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3)의 조사에서는 초, 중, 고생의 30% 가량이 사이버폭력가해나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사이버폭력 유형 중 사이버언어폭력이 가장 심각했다.

이처럼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폭력은 줄고 있는 반면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불링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문제는 많은 청소년들이 재미삼아 사이버불링을 저지르고 있는 점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의 조사결과, 사이버불링 가해 이유로는 ‘재미로’가 가장 많았고 ‘싫어서’, ‘복수’의 순이었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이버 불링 피해를 목격할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수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이버불링을 목격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 등을 적극적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사이버불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나 조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이버불링의 원인이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해나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도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불링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출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2014년 2월 3일 인출함).

2 사이버불링의 개념 및 유형

사이버불링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소 다르긴 하지만 디지털기기나 정보기기를 활용한 타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행위가 사이버불링인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이버불링이란 개념이 사이버폭력이라는 개념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또한 사이버따돌림 혹은 사이버왕따라고 불리기도 한다.

미국의 사이버불링현상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Patchin과 Hinduja는 이메일이나 채팅룸, 소셜네트워킹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친구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사이버불링이라고 정의한다(Patchin & Hinduja, 2011, p. 728). 이러한 행위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한다(Hinduja & Patchin, 2009). 그들은 아래 <표 1>과 같이 5문항으로 된 사이버불링척도를 만들었다(Patchin & Hinduja, 2011). 즉 누군가의 허락없이 사진을 찍어 게시하거나 누군가를 조롱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가 사이버불링에 해당되는 사례들이다.

<표 1> 사이버불링척도

주요내용
나는 다른 사람들이 웃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한 뭔가를 온라인에 올려놓았다.
나는 그들을 화내거나 조롱할 목적으로 컴퓨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나는 누군가의 사진을 찍고 허락 없이 온라인에 그 사진을 게시하였다.
나는 그들을 화내거나 조롱할 목적으로 마이스페이스나 이와 유사한 사이트에 뭔가를 게시하였다.
나는 그들을 화내거나 조롱할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출처: Patchin, J. W., & Hinduja, S. (2011).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Bullying Among Youth: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p. 735.

영국의 폭력예방센터인 Beatbullying(2009)은 아래 <표 2>와 같이 모두 15가지의 사이버불링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중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난 행위는 모욕적인 내용의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를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이버불링 사례

주요내용
불쾌한 비디오 클립을 보냈다.
누군가 싸우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오사이트(hate site)에 가입하거나 코멘트를 남겼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 도중 누군가를 배제하였다.
온라인 그룹에서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배제하였다.
누군가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공표하였다.
모욕적인 온라인 조사에서 누군가에게 투표하였다.
누군가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이용하였다.
누군가를 혼란스럽게 할 목적으로 사진을 변형하였다.
위협적인 전화나 장난전화를 하였다.
다른 사람의 SNS 프로필에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남겼다
SNS 프로필에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직접 남겼다.
채팅룸이나 포럼에 험담을 남겼다.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보냈다.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직접 상대방에게 보냈다.

출처: Beatbullying (2009). Virtual Violence : Protecting Children from Cyberbullying, p. 29.

한편, Beatbullying(2012)이 2011년 영국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실태를 조사할 때는 사이버 불링이 일어나는 플랫폼을 포함시켰는데 조사결과 페이스북이 52%로 가장 많았고 MSN 메신지 서비스가 24%로 그 뒤를 이었다. 즉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SNS와 채팅서비스에서 사이버불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이 사이버불링의 유형을 모두 12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표 3> 참조). 즉 사이버불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에서부터 아이디도용행위,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배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표 3> 사이버불링 유형

	유형	정의
1	사이버 스토킹 (Cyber Stalking)	특정인이 싫다고 했음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 글, 사진, 그림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2	사이버 비방 (Cyber Slander)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특정인에게 욕설, 비속어, 모욕적인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행위
3	이미지 불링 (Image Bullying)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상을 유포하는 행위
4	아이디 도용 (ID Theft)	특정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이버상에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
5	사이버갈취 (Cyber Extortion)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돈이나 사이버머니, 캐릭터 등을 요구하거나 데이터 소액결제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6	사이버 성폭력 (Sexting)	특정인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적인 모욕 등을 하는 행위
7	사이버 감옥 (Cyber Jail)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톡 등에서 특정인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비방 또는 욕설하는 행위
8	사이버 배제 (Cyber Exclusion)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친구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친구신청 거부 또는 배제하는 행위
9	플레이밍 (Flaming)	특정인을 자극하여 일부러 논쟁 또는 분란을 일으켜 특정인이 문제있음을 드러나도록 하는 의도적 행위
10	사이버명령 (Cyber-order)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부름 시키는 행위
11	안티 카페 (Anti-cafe)	특정인을 비방, 욕설, 따돌림 등을 위해 사이버상에 사이트나 게시판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행위
12	사이버 왕따 놀이 (Cyberbullying Play)	사이버상에서 특정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소속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욕설, 비방, 모욕하는 행위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학교폭력 2.0, 사이버불링실태와 해법 세미나 자료집, 44-45쪽.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최근의 사이버폭력유형을 아래 <표 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채팅방에서 친구를 초대한 후 집단적으로 욕을 퍼붓는 ‘떼카’가 성행하고 있으며 ‘카톡감옥’처럼 친구를 채팅방에 가두어 놓고 괴롭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표 4> 주요 학교 사이버폭력 유형

최신 유형	설명	
카카오톡 왕따 (카따)	카따란 '카카오톡 왕따'를 뜻하는 10대들의 은어로, 오프라인에서의 왕따 행위를 모바일 공간으로 옮겨와서 자행하는 것	
	떼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에게 단체로 욕을 퍼붓는 것
	카톡방폭	채팅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학생만 카톡방에 남게 하는 것
	카톡감옥	피해학생을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괴롭히는 것
	기타	·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의 말만 무시하며 유형취급하는 행위 · 피해학생을 초대한 뒤 일제히 의미없는 메시지를 던져 휴대폰을 마비시키는 행위
와이파이 셔틀	스마트폰의 테더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무선데이터 갈취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	
게임아이템 셔틀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을 피해학생에게서 상납받는 행위	

출처: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731000334>에서 재인용함(2014년 2월 21일 인출).

사이버불링의 경우 디지털기기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그 유형은 단문문자를 통한 유형, 사진 혹은 동영상 전송하는 유형, 보이스메일을 통한 유형, 이메일을 통한 유형, 채팅방을 통한 유형, IM(Instant Messaging) 서비스를 통한 유형, 블로그나 SNS를 통한 유형, 온라인 게임의 상호작용공간을 통한 유형 등 8가지로 분류되기도 한다(임상수, 2011). 실제로, 신나민·안화실(2013)은 사이버폭력³⁾이 발생하는 매체유형에 초점을 두면서 이메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채팅, 온라인게임 등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들은 사이버폭력의 피해/가해유형으로는 놀림/무시, 욕설/협박, 허위사실이나 소문 유포, 신상정보나 사생활노출,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및 합성사진 유포 등을 제시하였다(신나민·안화실, 2013).

한편, 일부 연구의 경우 사이버불링을 사이버폭력의 한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가령,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3)의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서는 아래 <표 5>와 같이 사이버왕따(사이버불링)를 사이버폭력의 범주 중 하나로 봤다.

3) 연구자들은 사이버불링이 학계에서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긴 하지만 연구대상자인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링'이라는 외래어보다는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게 됐다고 서론에서 밝히고 있다(신나민·안화실, 2013).

<표 5> 사이버폭력의 정의

	유형	정의
1	사이버 언어폭력	인터넷, 휴대폰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욕설, 거친 언어,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
2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SNS 등에 올려 아무나(불특정 다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
3	사이버 스토킹	특정인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거나, 블로그/미니홈피, SNS 등에 방문하여 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
4	사이버 성폭력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 혹은 성적 비하 발언, 성차별적 욕설 등 성적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게시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
5	신상정보 유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신상 정보(이름, 거주지, 재학중인 학교 등)를 유포시키는 행위
6	사이버 왕따 (사이버불링)	인터넷 상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 핸드폰 텍스트 메시지, 채팅 사이트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한 왕따를 지칭하는 신종 따돌림

출처: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사이버폭력실태조사 요약보고서, 1쪽.

3 사이버불링의 원인 및 실태

1) 사이버불링의 원인

사이버불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사이버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에 대한 원인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사이버불링 피해의 원인으로는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이용 등 매체관련 변인 (Accordino & Accordino, 2011; Erdur-Baker, 2010; Hinduja & Patchin, 2008; Mesch, 2009; Navarro & Jasinski, 2012; Smith et al., 2008)을 들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카카오톡 같은 채팅서비스나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 등 타인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연결망에서 따돌림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Accordino & Accordino, 2011; 이창호·이경상, 2013). 미국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SNS사이트에 개인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며 채팅룸에 많이 참여한 청소년들이 사이버 불링피해를 더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Mesch, 2009). 또 다른 연구에서도 메신저 서비스인 IM(Instant Messaging)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소셜네트워크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채팅룸을 자주 방문하는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Navarro & Jasinski, 2012).

국내 연구에서도 온라인활동이 활발하며 주중 게임을 많이하는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을 당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나민·안화실, 2013). 이 같은 연구결과들은 사이버 불링의 온상지라 할 수 있는 온라인커뮤니케이션 참여가 활발할수록 사이버불링을 당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언론에 자주 보도됐듯이,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불링이 심각한 문제이다.

매체변인 외에는 학교만족도나 부모와의 관계 등이 사이버불링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즉 학교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신나민·안화실, 2013), 부모와의 친밀도가 떨어질수록 사이버불링을 더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ccordino & Accordino, 2011). 한편,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은 사이버불링피해 경험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공간에서 불링가해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이 피해도 많이 당하는 양상을 보였다(Accordino & Accordino, 2011; 이창호·이경상, 2013).

부모의 중재유형도 사이버불링피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Mesch(2009)가 미국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자녀가 방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한해 놓는 규칙을 마련할수록 자녀의 사이버불링피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하지만,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설치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같은 부모의 일방적인 통제(제한적 중재)는 사이버불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Livingstone & Helsper(2008)는 적극적 공동 중재, 기술적 제한, 상호작용 제한, 감시라는 네 가지 중재 유형을 도출하였고, 그 중에서 자녀의 이메일, 채팅, 인스턴트 메시징 이용을 제한하는 즉 온라인 상호작용 활동을 제한하는 제한적 중재만이 온라인 위험 노출(음란물, 폭력물, 개인정보제공 등)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사이버불링 가해원인 역시 피해원인과 유사하다. 즉 채팅서비스나 소셜네트워크 이용 등 매체관련 변인, 부모와의 관계, 학교만족도 등이 사이버불링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즉 디지털리터러시⁵⁾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신나민·안화실, 2013)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결속형 소셜미디어를

4) 연구자는 이를 평가적 중재(evaluative mediation)라 부르고 있다.

5)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정보올리기, 웹사이트에 사진 올리기, 블로그 운영하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신나민·안화실, 2013, 7쪽).

많이 이용할수록 가해경험이 많았다(이창호·이경상, 2013). 부모와의 애착은 사이버불링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고(성동규 외, 2006) 부모와의 대화가 자유롭거나 개방적일수록 휴대폰을 통한 언어폭력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기, 2011). 아울러,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이 크고 학업스트레스가 심한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종길, 2013) 즐거운 학교생활이나 원만한 교우관계 등 학교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가해경험에 가담할 가능성이 적었다(신나민·안화실, 2013;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거나 말썽을 일으킨 학생들이 사이버불링을 많이 저질렀다(Hinduja & Patchin, 2008). 또 다른 연구에서도, 긴장과 좌절을 많이 겪는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을 더 많이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Patchin & Hinduja, 2011). 즉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거나 가족과의 불화 등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남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한 연구결과에서도, 교우관계가 안 좋거나 학업스트레스가 심할수록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불링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호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음주나 흡연, 도둑질 등 문제행동에 가담한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가해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았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의 이용에 관한 학교규칙을 가지고 있을수록 사이버불링에 가담할 가능성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ross et al., 2012). 하지만, 중학생의 경우 문제행동경험이나 디지털기기에 관한 규칙과 같은 같은 변인들은 사이버불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더불어, 사이버불링 가해원인으로는 학교, 컴퓨터, 휴대전화에서의 비행친구 수, 부모로부터의 욕설·폭력경험, 충동성, 도덕적 죄책감이 제시되었다(남상인·권남희, 2013). 즉 비행친구가 많고 부모로부터 욕설이나 폭력을 많이 경험하고 충동적이며 도덕적 죄책감을 덜 느낄수록 사이버불링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수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집단괴롭힘 가해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전신현·이성식, 2010). 정보통신윤리의식수준 또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정보통신윤리의식수준이 높을수록 가해경험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성동규 외, 2006;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캐나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긍정적 믿음이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Li & Fung, 2012). 또한 교과 외 활동이 활발할수록 사이버불링에 가담할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콩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소속감이 낮은 학생들이 사이버불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공감능력이 높은 청소년이 사이버불링피해를 더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ong, Chan, & Cheng, 2014). 하지만, 자기효능감은 사이버불링가해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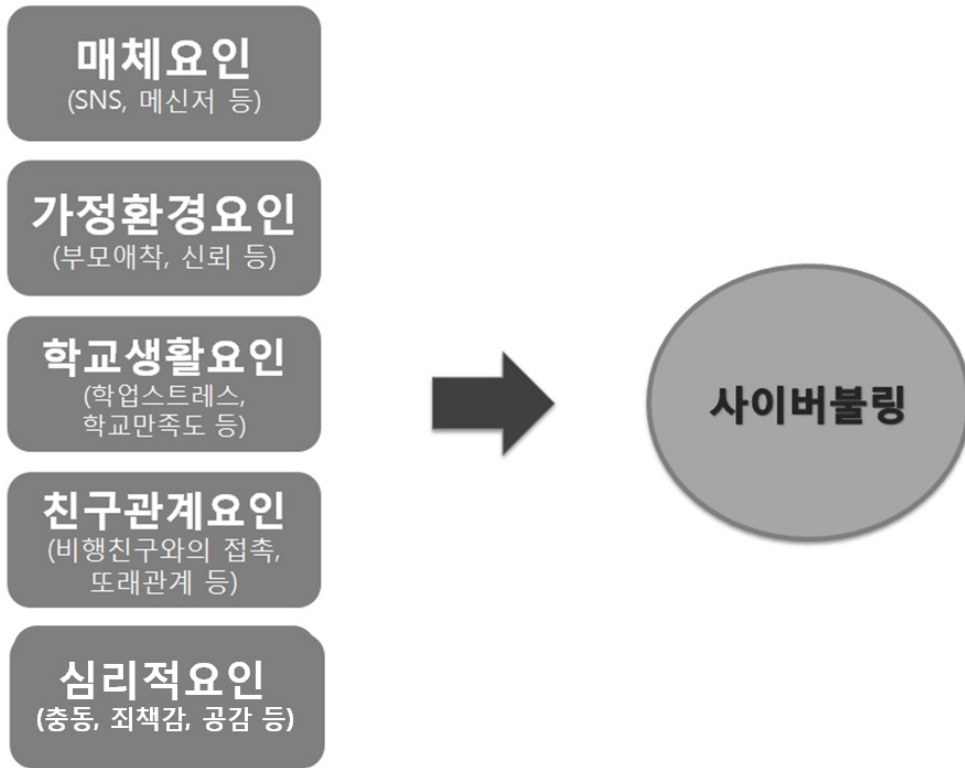
피해경험에 어떤 유의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특히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기도 했다(성동규 외, 2006; 이창호·이경상, 2013). 즉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사이버불링은 오프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폭력과는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전신현·이성식, 2010; Cross et al., 2012; Erdur-Baker, 2010; Gradinger, Strohmeier & Spiel, 2012, Wong, Chan, & Cheng, 2014). 가령, 미국의 한 조사결과, 오프라인상에서의 불링경험이 사이버불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오프라인 상에서의 불링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링이 매우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Hinduja & Patchin, 2008). 즉 오프라인 공간에서 폭력에 가담한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에 가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역으로 사이버불링에 가담한 학생들은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남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확률이 높다. 영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전통적 불링과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불링 간에 관련성이 높았다(Smith et al., 2008). 또한 여학생들이 전통적 불링과 사이버불링의 피해를 남학생보다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조사에서도 현실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청소년들과 휴대전화를 통해 집단괴롭힘을 당한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집단괴롭힘에 참여할 경우가 많았다(전신현·이성식, 2010). 이처럼 사이버불링은 전통적인 불링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들은 오프라인/온라인상에서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학업스트레스, 비행 친구 수, 건전한 사이버유희나 태도 등이 사이버불링가해경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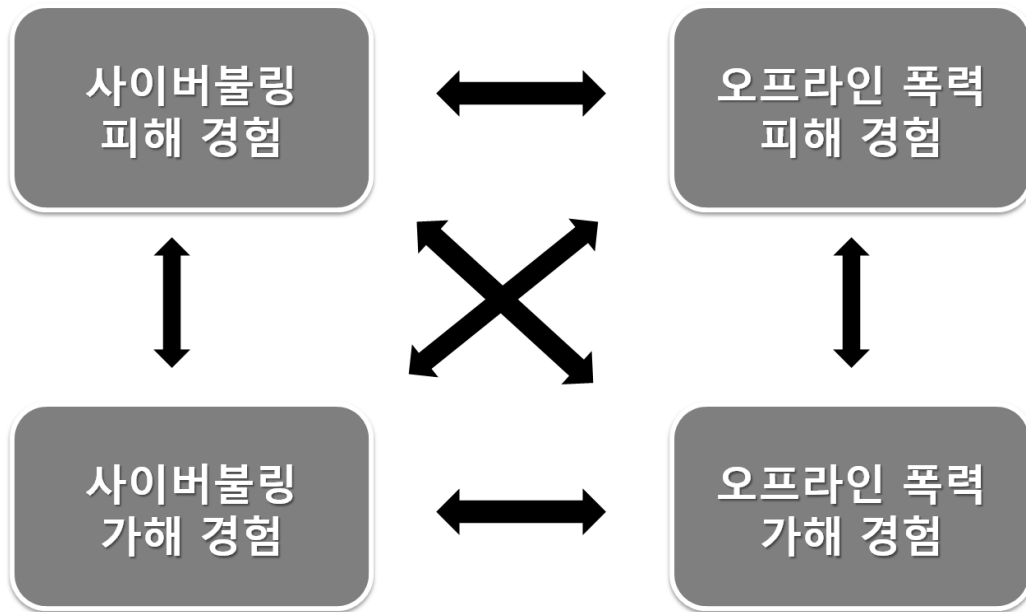
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매체이용요인, 가정환경요인, 학교생활요인, 친구관계요인, 심리적 요인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1]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매체이용정도, 사이버윤리 및 자신감, 부모애착 및 신뢰, 미디어이용에 대한 부모중재, 학교생활만족도, 공감 등의 변인을 사용하였다.

또한 앞서 논의했듯이,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폭력유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이버불링은 물리적, 신체적 폭력과 매우 밀접히 관련돼 있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의 조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이버공간의 경험이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학교폭력과 매우 밀접히 연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사이버불링과 학교폭력은 상호 중첩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사이버불링과 오프라인 폭력 간의 관계

본 연구도 사이버불링과 오프라인 폭력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보고 두 변인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피해와 가해경험의 중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버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 오프라인폭력피해 및 가해경험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2) 사이버불링의 실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20~30% 학생들이 사이버불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략 20%의 학생들이 사이버불링 피해를 겪고 있고 비슷한 비율의 학생들이 사이버불링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네덜란드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22%의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불링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16%의 학생들은 가해경험이 있었다(Dehue, Bolman & Vollink, 2008). 영국청소년들의 경우 6.6%, 이탈리아청소년들의 경우 7.3%, 스페인청소년들의 경우 7.5%가 조사시점 최근 2개월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휴대전화를 통한 사이버불링의 경우는 각각 4.1%, 9.5%, 4.2%였다(Ortega et al., 2012)⁷⁾.

6) http://www.cyberbullying.us/Cyberbullying_Identification_Prevention_Response_Fact_Sheet.pdf 에서 2014년 2월 6일 인출

7)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을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불링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불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한편, 영국의 폭력예방재단인 Beatbullying(2012)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청소년들의 28%가량이 사이버불링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호주 청소년의 경우 23%가 사이버불링피해를 한번 이상 당해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18%의 학생들은 사이버불링가해행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Cross et al., 2012). 이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의 경우 가해행동이 많은 반면 여학생들은 사이버불링피해를 더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청소년의 경우 최근 2개월간 사이버불링경험을 조사한 결과 7%의 학생들이 사이버불링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의 학생들이 사이버불링피해를 겪었다(Gradinger, Strohmeier & Spiel, 2012).

우리와 가까운 홍콩의 경우는 사이버불링이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1개월간의 사이버불링경험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1.5%가 사이버불링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23%는 사이버불링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Wong, Chan, & Cheng, 2014).

캐나다의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57.5%가 최근 3개월간 사이버불링에 가담하거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shna et al., 2012). 이 연구는 중, 고등학생 2,186명을 조사했는데 42.5%의 학생들은 사이버불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사이버불링피해만 당한 학생은 23.8%, 가해경험만 있는 학생은 8%, 사이버불링피해와 가해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집단은 25.7%였다. 즉 사이버불링피해를 당하고 동시에 사이버불링에 가담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에 관여된 집단일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았고 자신의 패스워드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오프라인폭력행위에도 가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방법이나 국가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사이버불링이 미국, 영국, 캐나다, 홍콩 등 전 세계적인 청소년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조사 개요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조사의 영역 및 내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주요 설문 영역 및 내용

주요 영역	세부 내용	참고문헌
사이버불링실태조사	- 사이버불링피해경험 (8개 문항) - 사이버불링피해시 행동 - 사이버불링가해경험 (8개 문항) - 사이버불링가해 이유 - 사이버불링 목격 경험 여부 - 사이버불링목격시 행동	사이버불링과 관련한 국내외문헌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Hinduja & Patchin, 2009 등)을 참조하여 개발함
학교폭력실태조사	- 학교폭력피해경험(5문항) - 학교폭력가해경험(5문항)	한국교육개발원 (2012)
미디어교육	- 사이버불링관련 교육 횟수 - 미디어제작교육 횟수 - 사이버윤리교육 횟수	없음 (자체 개발)
부모 중재	- 제한적 중재 (2문항) - 기술적 중재 (2문항) - 적극적 중재 (3문항) - 중재 안함 (1문항)	국내외 문헌 참고 (이숙정·전소현, 2010; 임소혜·조연하, 2011; Livingstone & Helsper 2008, Mesch, 2009)
부모애착 및 신뢰	- 부모애착 6문항, 부모신뢰 2문항 등 8문항 ※ 부모애착의 경우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참조 - 부모신뢰의 경우 윤영민(2000) 참조	이경상·안선영(2009), 윤영민(2000)
학교생활만족도	- 친구와의 어울림, 학교규칙준수 등 5문항	황선환·김홍설 (2012)
사이버윤리의식	- 정보통신윤리의식 5가지 하위요인(존중, 정의, 예절, 자율, 책임) 중 타인에 대한 존중에 해당하는 문항 11개 가운데 가운데 4문항을 사용함(조일주·김정검, 2009, 123쪽 참조)	조일주·김정검 (2009)
사이버자신감	-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신감, 솔직함 등 4문항	신나민·안화실 (2013)
공감	- 정서적 공감 4문항, 인지적 공감 4문항 등 8문항	신나민 (2012)

표집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식으로 이뤄졌다. 즉 전국을 16개 시도로 층화한 뒤 2013 교육기본통계를 기초로 학생수 비례에 따라 각 시도별로 학교수를 할당하였고 무작위표집에 의해 조사대상학교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24개교 등 총 48개 학교를 표집하였다. 각 학교당 3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중학생 2,000명, 고등학생 2,000명 등 총 4,000명의 학생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은 54.1%로 여학생보다 8% 포인트 더 많았다. 가정 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이 84.4%로 다수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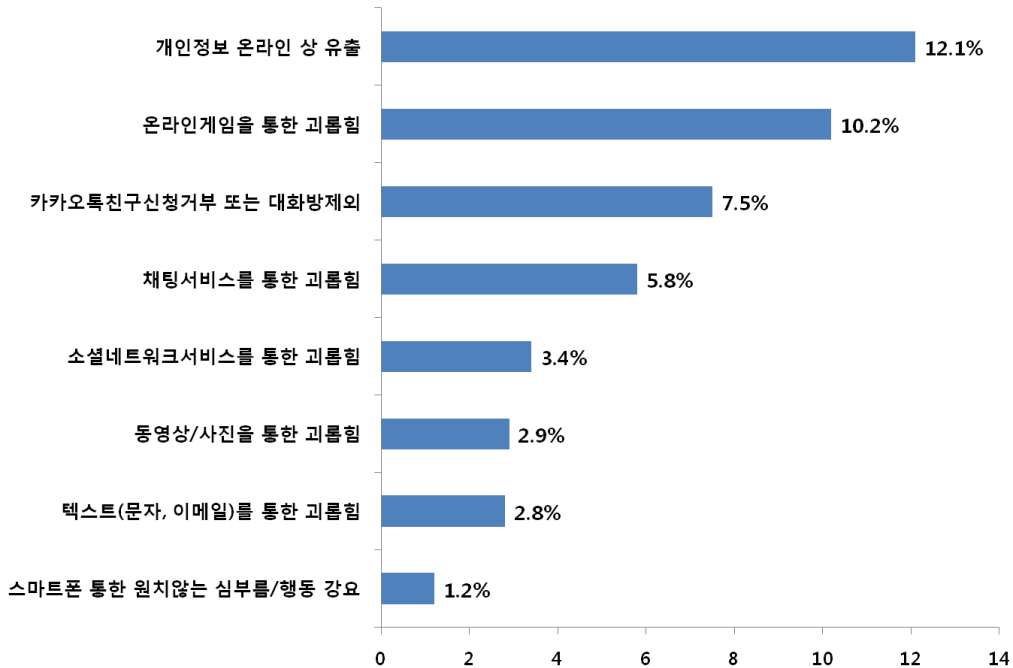
<표 7> 응답자 인적사항

		사례수(명)	백분율(%)
전체		4,000	100.0
성	남자	2,166	54.1
	여자	1,834	45.9
교급	중학교	2,000	50.0
	고등학교	2,000	50.0
학년	중1	659	16.5
	중2	680	17.0
	중3	661	16.5
	고1	665	16.6
	고2	709	17.7
	고3	626	15.7
가정 유형	양부모	3,375	84.4
	한부모	399	10.0
	조손가정	64	1.6
	기타	151	3.8
	모름/무응답	11	.3

5 주요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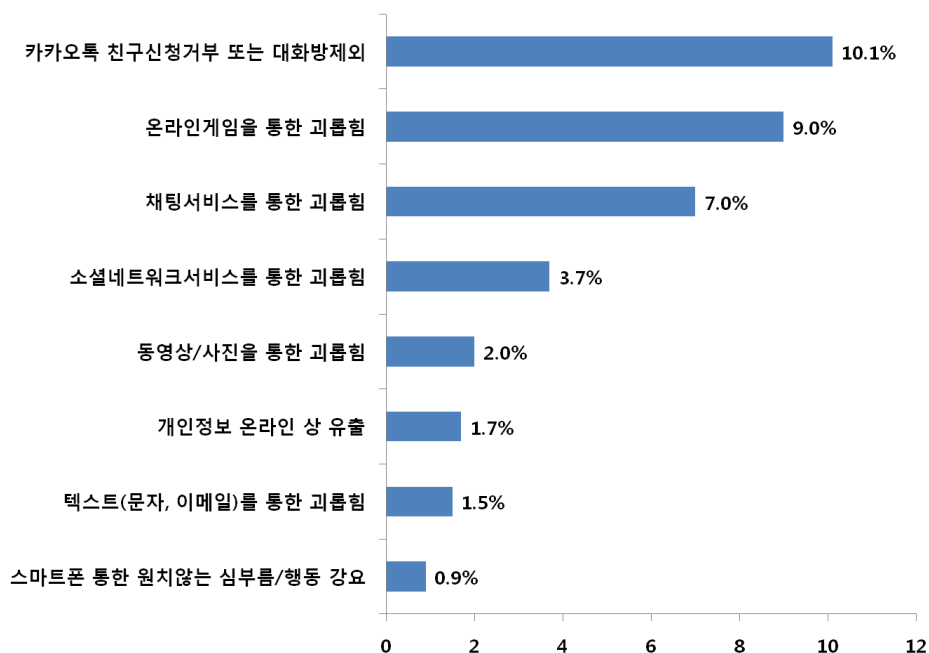
1) 사이버불링 피해/가해 경험

최근 3개월간 사이버불링피해경험을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온라인상에 개인정보유출이었다. 즉 응답자의 12.1%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유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온라인게임을 통한 괴롭힘이 뒤를 이었는데 10명 중 1명 가량(10.2%)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한 괴롭힘이나 텍스트를 통한 괴롭힘은 비교적 빈도수가 작았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원치않는 심부름이나 행동을 강요당한 사례는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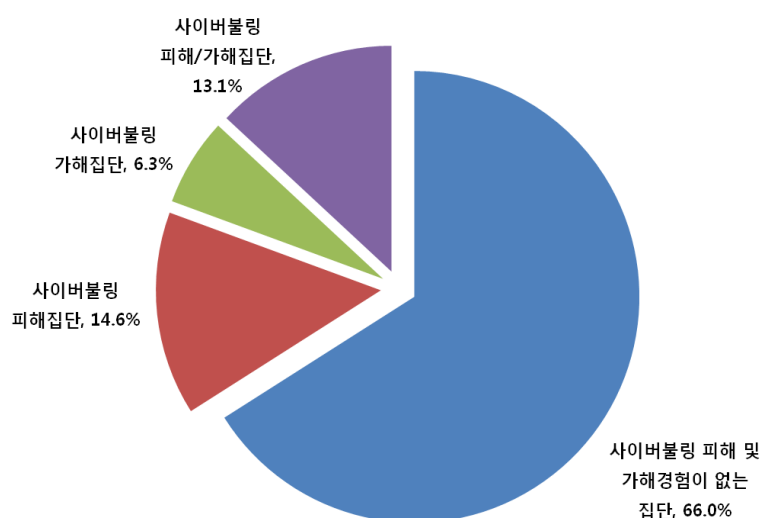
[그림 3] 사이버불링피해경험 비율

최근 3개월간 사이버불링가해경험으로는 카카오톡 이용 중 친구신청을 거부하거나 대화방에서 누군가를 제외한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응답자 10명 중 1명 가량(10.1%)이 이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게임을 통해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9.0%에 달했다. 하지만, 사이버불링피해경험과 달리 개인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유출시킨 경우는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그림 4] 사이버불링가해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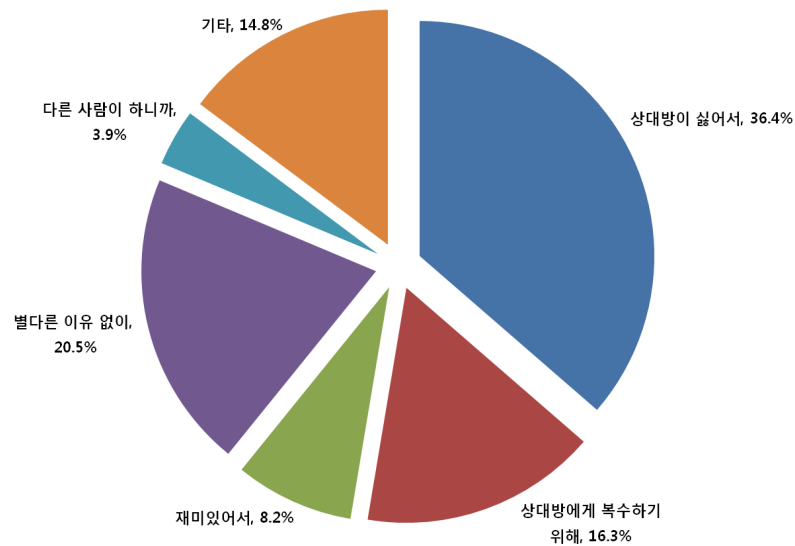
사이버불링피해 및 가해경험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한 결과, 사이버불링피해 및 가해경험 어느 쪽도 없는 집단이 전체의 66.0%를 차지했고 사이버불링피해만 당한 집단은 14.6%, 가해경험만 있는 집단은 6.3%, 사이버불링피해와 가해경험을 다 갖고 있는 집단은 13.1%를 차지했다([그림 5] 참조).



[그림 5] 사이버불링집단유형

2) 사이버불링 가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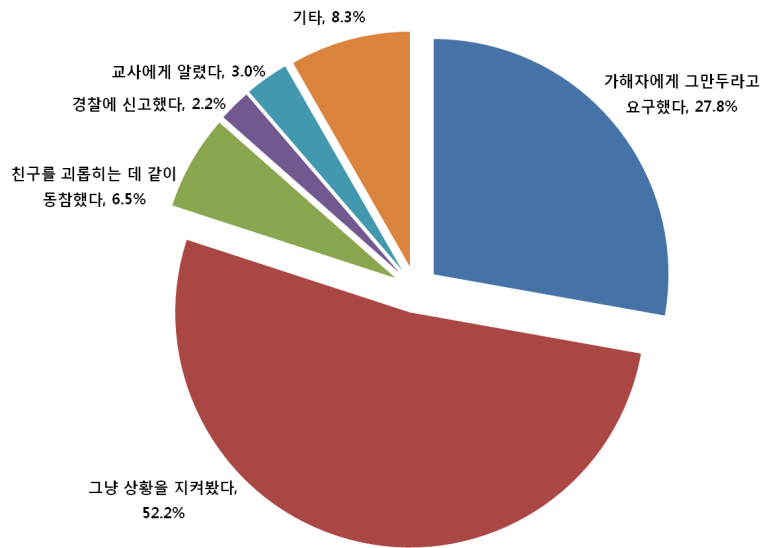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상대방이 싫거나 미워서가 36.4%로 가장 높았다. 별다른 이유없이 저질렀다는 응답자도 20.5%에 달했다. 재미있어서 저질렀다는 응답은 8.2%였다.



[그림 6] 사이버불링가해이유

3) 사이버불링 목격시 행동

사이버불링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량(52.2%)이 그냥 상황을 지켜봤다고 답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2.2%) 교사에게 알리는 경우(3.0%)는 극히 드물었다.



[그림 7] 사이버불링피해목격시 행동

4) 사이버불링과 오프라인학교폭력 간의 상관관계

사이버불링과 학교폭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앞서 설명한 대로 리코딩한 피해 및 가해경험지수를 투입했다. 피해 및 가해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자수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사이버불링피해경험과 가해경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표 8> 참조). 학교 폭력피해경험과 가해경험 간에도 상관관계가 높았다. 또한 사이버불링피해와 학교폭력피해 경험 간에도 관련성이 높았고 사이버불링가해경험과 학교폭력피해경험도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불링과 학교폭력 간의 강한 중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위험에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표 8> 사이버불링과 오프라인학교폭력 간의 상관관계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사이버불링 가해경험	학교폭력피해 경험	학교폭력가해 경험
사이버불링피해 경험	1			
사이버불링가해 경험	.648**	1		
학교폭력피해경험	.457**	.447**	1	
학교폭력가해경험	.419**	.448**	.644**	1

**p<.01

5)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미디어관련 변인

사이버불링피해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미디어관련 변인을 투입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매체이용, 미디어교육, 부모중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이버윤리의식 또한 사이버불링피해를 예측하는 요인이 아니었다. 반면, 사이버자신감은 사이버불링피해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사이버불링가해 경험은 사이버불링피해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즉 사이버불링가해 경험이 많을수록 사이버불링피해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투입된 변인들은 전체변량의 4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정된 R제곱=.430).

<표 9> 사이버불링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인구학적 변인	성	.241	.127	.078
	교급	.208	.111	.072
매체이용	채팅	.029	.035	.032
	SNS	-.015	.034	-.018
	온라인게임	-.011	.034	-.014
미디어교육	사이버불링 교육	.075	.083	.038
	미디어제작 교육	-.107	.080	-.049
	사이버윤리 교육	-.046	.078	-.025
부모중재	제한적 중재	.072	.065	.043
	기술적 중재	.042	.072	.022
	적극적 중재	.008	.073	.004
	중재 안 함	-.011	.058	-.007
사이버윤리		-.122	.101	-.043
사이버자신감		.141	.054	.091**
사이버불링 가해경험		.599	.034	.630***
수정된 R제곱		.430		
F값		26.432***		

*p<.05, **p<.01, ***p<.001

8) 사이버불링피해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종속변수의 점수는 1점에서 8점까지이다.

위 변인들이 사이버불링가해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매체이용, 미디어교육, 부모 중재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사이버자신감 또한 영향력이 없었다. 하지만, 사이버 윤리의식수준이 높을 경우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 불링피해 때와 마찬가지로 사이버불링피해경험은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투입된 변인들은 전체변량의 43.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R제곱=.435).

<표 10> 사이버불링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인구학적 변인	성	-.231	.133	-.072
	교급	.073	.117	.024
매체이용	채팅	.029	.037	.031
	SNS	.030	.036	.033
	온라인게임	.038	.035	.043
미디어교육	사이버불링 교육	-.055	.087	-.026
	미디어제작 교육	.138	.083	.060
	사이버윤리 교육	-.011	.082	-.006
부모중재	제한적 중재	-.023	.069	-.013
	기술적 중재	.060	.076	.030
	적극적 중재	.106	.076	.052
	중재 안 함	.017	.061	.010
사이버윤리		-.286	.105	-.096**
사이버자신감		-.037	.056	-.023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659	.037	.626***
수정된 R제곱		.435		
F값		26.871***		

*p<.05, **p<.01, ***p<.001

(2) 학교생활만족도, 공감 등 심리적 변인 및 부모 변인

학교생활만족도, 공감, 부모애착 및 신뢰가 사이버불링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이버불링피해는 줄어드는 경향이

9)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종속변수의 점수는 1점에서 8점까지이다.

있었다. 하지만, 부모애착 및 신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공감변인 가운데는 정서적 공감이 높을수록 오히려 사이버불링피해를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변인들은 전체변량의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영향력은 미미하였다.

<표 11> 심리적변인 및 부모관련 변인이 사이버불링피해에 미치는 영향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학교생활만족도		-.143	.059	-.082*
공감	정서적 공감	.152	.047	.112***
	인지적 공감	-.050	.056	-.032
부모애착		-.021	.063	-.016
부모신뢰		-.051	.055	-.042
수정된 R제곱		.016		
F값		4.532***		

*p<.05, **p<.01, ***p<.001

사이버불링가해경험에는 인지적 공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상대방의 관점이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청소년들일수록 사이버불링가해를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학교생활만족도, 부모애착 및 신뢰는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을 줄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투입된 변인들은 전체변량의 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심리적변인 및 부모관련 변인이 사이버불링가해에 미치는 영향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학교생활만족도		-.031	.088	-.014
공감	정서적 공감	.101	.069	.060
	인지적 공감	-.228	.077	-.124**
부모애착		-.073	.088	-.044
부모신뢰		-.062	.077	-.041
수정된 R제곱		.018		
F값		3.813***		

*p<.05, **p<.01, ***p<.001

6 논의

지금까지 사이버불링의 개념, 원인 및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이버불링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채팅서비스, SNS, 동영상이나 사진 등 디지털 기기나 장치를 활용한 타인에 대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의미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따라서, 디지털기기의 진화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유형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교묘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불링실태에 대한 기존 조사를 정리한 결과, 사이버불링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다. 비록 사이버불링피해 및 가해경험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개 10%~30% 정도의 학생들이 사이버불링에 연루돼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불링경험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도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 및 가해경험과의 상관관계도 매우 높게 나타나 사이버불링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사이버불링에 가담할 확률이 높다. 앞서 언급한 캐나다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피해나 가해경험만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집단보다는 피해 및 가해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청소년집단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최근 나타난 사이버불링의 특징이다.

앞서 살핀대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경험을 알아 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14.6%가 사이버불링피해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해경험만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6.3%였다. 사이버불링피해 및 가해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집단은 전체의 13.1%에 달했다. 즉 청소년의 34%가 어떤 식으로든 사이버불링을 경험하고 있었다. 사이버불링피해 및 가해유형으로는 게임을 통한 사이버불링, 카카오톡 상에서 친구신청을 거부하거나 친구 초대시 배제하는 경우, 채팅이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사이버불링이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응답자들은 사이버불링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이나 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사이버불링을 목격했을 때도 절반 약간 넘는 청소년들이 그냥 상황을 지켜봤다고 응답했다.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들처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학교폭력과 사이버불링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오프라인 공간에서 폭력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에서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불링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학교생활만족도는 부적인 영향을, 사이버자신감은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분석됐다. 사이버불링가해경험에 영향을 준 변인들은 사이버윤리의식과 인지적 공감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윤리의식이 높고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은 청소년이 사이버불링에 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발견은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사이버윤리의식 수준을 높이며 인지적 공감능력을 키울수록 사이버불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보도자료 (2013.11.29). 2013년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및 정보공시 분석결과 발표.
- 김종길 (2013).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학업스트레스가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9(1), 47-68.
- 남상희, 권남희 (2013). 청소년사이버불링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23-43.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사이버폭력실태조사 요약보고서**.
<http://isis.kisa.or.kr/board/?pageId=040100>에서 2014년 2월 3일 인출
- 성동규, 김도희, 이윤석, 임성원 (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성향·사이버폭력피해경험·윤리의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호, 79-129.
- 신나민 (2012). 청소년 또래괴롭힘의 참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공감 구인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4), 1-21.
- 신나민, 안화실 (2013). 청소년 사이버폭력 현황 및 피해·가해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26(4), 1-21.
- 윤영민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분석모형의 개발. **정보와 사회**, 2호, 133-153.
- 이경상, 안선영 (2009). 한국청소년패널조사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숙정, 전소현 (2010). 인터넷중독에 대한 부모중재 효과 연구. **한국방송학보**, 24(6), 289-322.
- 이정기 (2011). 청소년의 성향적 휴대폰 이용동기와 중독, 언어폭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1(2), 365-401.
- 이창호, 이경상 (2013). 소셜미디어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탐구: 네트워크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259-285.

- 임상수 (2011). 사이버불링에 대한 윤리교육의 대응. **윤리연구**, 81호, 291-315.
- 임소혜, 조연하 (2011). 부모와 또래집단의 게임이용중재가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8(4), 173-218.
- 조일주, 김정겸 (2009). 정보통신윤리의식 측정 도구 개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5(4), 107-128.
- 조희정 (2014).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해와 대응. **소셜미디어연구포럼** (편.), **소셜미디어의 이해** (pp.353-379). 서울: 미래인.
- 전신현, 이성식 (2010).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 집단괴롭힘 현상의 원인 모색. **청소년학연구**, 17(11), 159-181.
- 한국교육개발원 (2012).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설문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소리없는 폭력, 사이버왕따 진단과 해법” 세미나 자료집.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12.18). 학교폭력 2.0, 사이버불링실태와 해법 세미나 자료집.
- 황선환·김홍설 (2012). 중학생의 방과후 스포츠클럽활동 참가가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 771-778.

[언론보도]

- 동아일보 (2013. 3. 7). 왕따에 떨던 10대, 이젠 ‘카따’ 공포.
<http://news.donga.com/3/all/20130307/53516043/1>에서 2014년 2월 3일 인출.
- Accordino, D. B., & Accordino, D. B. M. P. (2011). An Exploratory Study of Face-to-Face and Cyberbullying in Sixth Grade Students. *American Secondary Education*, 40(1), 14-30.
- Beatbullying (2009). Virtual Violence : Protecting Children from Cyberbullying.
- Beatbullying (2012). Virtual Violence II: Progress and Challenges in the Fight against cyberbullying.
- Cross, D., Shaw, T., Epstein, M., Monks, H., Dooley, J., & Hearn, L. (2012). Cyberbullying in Australia: Is School Context Related to Cyberbullying Behavior? In Qing L., Donna C., and Peter. K. S. (Eds.), *Cyberbullying in the Global Playground: Research from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 75-98). West Sussex, UK: Wiley-Blackwell.
- Dehue, F., Bolman, C., & Vollink, T. (2008). Cyberbullying: Youngsters' Experiences and Parental Percep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11(2), 217-223.
- Erdur-Baker, Ozgur (2010). Cyberbullying and its correlation to traditional bullying, gender and frequent and risky usage of Internet-mediated communication tools. *New Media & Society*, 12(1), 109-125.

- Grading, P., Strohmeier, D., & Spiel, C. (2012). Motives for Bullying Others in Cyberspace: A Study on Bullies and Bully-Victims in Austria. In Qing L., Donna C., and Peter. K. S. (Eds.), *Cyberbullying in the Global Playground: Research from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 263-284). West Sussex, UK: Wiley-Blackwell.
- Hinduja, S., & Patchin, J. W. (2008). Cyberbullying: an exploratory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offending and victimization. *Deviant Behavior*, 29, 129-156.
- Hinduja, S., & Patchin, J. W. (2009). *Bullying Beyond the Schoolyard*. 조아미 외 역 (2012). 사이버 폭력. 파주: 정민사.
- Li, Q., & Fung, T. (2012). Predicting Student Behaviors: Cyberbullies, Cybervictims, and Bystanders. In Qing L., Donna C., and Peter. K. S. (Eds.), *Cyberbullying in the Global Playground: Research from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 99-114). West Sussex, UK: Wiley-Blackwell.
- Livingstone, S., & Helsper, E. (2008).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s Internet Us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2(4), 581-599.
- Mesch, G. S. (2009). Parental Mediation, Online Activities, and Cyberbullying. *CyberPsychology & Behavior*, 12(4), 387-393.
- Mishna, F., Khoury-Kassabri, M., Gadalla, T., & Daciuk, J. (2012). Risk factors for involvement in cyberbullying: Victims, bullies and bully-victim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 63-70.
- Navarro, J. N., & Jasinski, J. L. (2012). Going Cyber: Using Routine Activities Theory to Predict Cyberbullying Experiences. *Sociological Spectrum*, 32, 81-94.
- Patchin, J. W., & Hinduja, S. (2011).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Bullying Among Youth: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Youth & Society*, 43(2), 727-751.
- Smith, P. K., Mahdavi, J., Carvalho, M., Fisher, S., Russell, S., & Tippett, N. (2008). Cyberbullying: its nature and impact in secondary school pupil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4), 376-385.
- Wong, D.S.W., Chan, H.C., & Cheng, C.H.K. (2014). Cyberbullying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in Hong Ko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6, 133-140.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 및 특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창호 연구위원

목 차

- ① 사이버불링 개념 및 유형
 - ② 사이버불링 원인 및 실태
 - ③ 사이버불링 조사결과
 - ④ 논의
- 부록

1. 사이버불링 개념 및 유형

사이버불링 정의

이메일이나 채팅룸, 소셜네트워킹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동료들을 괴롭히는 행위 (Patchin & Hinduja, 2011)

- 의도적
- 반복적

루머를 퍼뜨리고 동의 없이 난처한 사진을 올리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 (Mesch, 2009)

1. 사이버불링 개념 및 유형

사이버불링 정의

사이버불링의 경우 디지털 기기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유형은 크게 단문문자, 사진 혹은 동영상, 보이스메일, 이메일, 채팅방,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SNS 사이트, 온라인게임의 상호작용공간 등을 통한 행위유형으로 분류됨(임상수, 2011).

최근에는 카카오톡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일명 ‘카따’ 현상이 등장(동아일보, 2013. 3. 7). ‘카따’는 카카오톡의 왕따를 의미하는 것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현상을 의미

1. 사이버불링 개념 및 유형

사이버불링 정의

사이버불링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목격되고 사이버공간에 보다 오래 남기 때문에 그 부정적 효과가 매우 큼(Parris et al., 2012).

사이버불링은 면대면 상황이 아닌 익명성을 전제로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면에서 전통적인 괴롭힘과 다름.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사이버공간을 통해서면 면전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을 익명성을 이용해 말할 수 있음. 또한 사이버불링은 물리적 공간에 규제받지 않고 일어난다는 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 있을 때 일어나는 전통적인 괴롭힘과 다름.

특히 물리적 폭력에 비해 **전파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음.

1. 사이버불링 개념 및 유형

◆ 사이버불링 유형

	유형	정의
1	사이버 스토킹 (Cyber Stalking)	특정인이 싫다고 했음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 글, 사진, 그림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2	사이버 비방 (Cyber Slander)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특정인에게 욕설, 비속어, 모욕적인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행위
3	이미지 불링 (Image Bullying)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하는 행위
4	아이디 도용 (ID Theft)	특정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이버상에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
5	사이버갈취 (Cyber Extortion)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돈이나 사이버머니, 캐릭터 등을 요구하거나 데이터 소액결제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6	사이버 성폭력 (Sexting)	특정인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적인 모욕 등을 하는 행위
7	사이버 감옥 (Cyber Jail)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톡 등에서 특정인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비방 또는 욕설하는 행위

1. 사이버불링 개념 및 유형

◆ 사이버불링 유형

	유형	정의
8	사이버 배제 (Cyber Exclusion)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친구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친구신청 거부 또는 배제하는 행위
9	플레이밍 (Flaming)	특정인을 자극하여 일부러 논쟁 또는 분란을 일으켜 특정인이 문제있음을 드러나도록 하는 의도적 행위
10	사이버명령 (Cyber-order)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부름 시키는 행위
11	안티 카페 (Anti-cafe)	특정인을 비방, 욕설, 따돌림 등을 위해 사이버상에 사이트나 게시판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행위
12	사이버 왕따 놀이 (Cyberbullying Play)	사이버상에서 특정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소속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욕설, 비방, 모욕하는 행위

※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학교폭력 2.0 사이버 불링실태와 해법 세미나 자료집, 44-45쪽

1. 사이버불링 개념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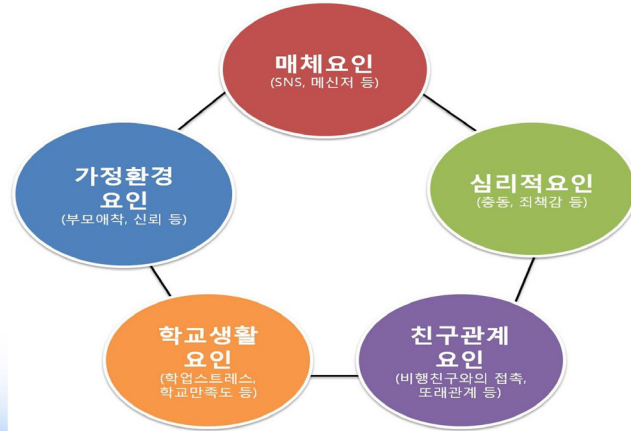
◆ 주요 학교 사이버폭력 유형

최신유형	설명
카카오톡왕따 (카따)	카따란 '카카오톡 왕따'를 뜻하는 10대들의 은어로, 오프라인에서의 왕따 행위를 모바일 공간으로 옮겨와서 자행하는 것
	때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에게 단체로 욕을 퍼붓는 것
	카톡방폭 채팅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학생만 카톡방에 남게 하는 것
	카톡감옥 피해학생을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괴롭히는 것
	기타 ·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의 말만 무시하며 유형취급하는 행위 · 피해학생을 초대한 뒤 일제히 의미 없는 메시지를 던져 휴대폰을 마비시키는 행위
와이파이셔틀	스마트폰의 테더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무선데이터 갈취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
게임아이템셔틀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을 피해학생에게서 상납받는 행위

※ 출처: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731000334>에서 재인용함
(2014년 2월 21일 인출)

2. 사이버불링 원인 및 실태

◆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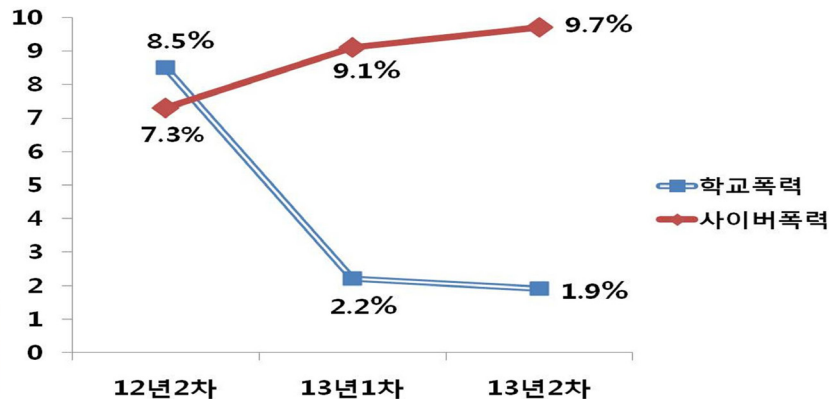
2. 사이버불링 원인 및 실태

사이버불링 사례

- ◆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특정 학생에 대해 집단적으로 비방과 욕설을 올리는 일명 '사이버왕따카페'가 경찰에 적발
-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한 여고생은 카카오톡을 통해 심여명의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등 집단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줌
- ◆ 아이돌그룹 티아라의 왕따사건을 모방해 초등학생들 사이에 일명 '티아라 놀이'가 유행. 이 놀이는 친구 한명을 왕따로 지목하고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이 친구를 괴롭히는 행위

2. 사이버불링 원인 및 실태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증가 추이



2. 사이버불링 원인 및 실태

네덜란드 연구

네덜란드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6% 가량의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누군가를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고, 22%의 학생들은 누군가에 의해 최소한 한차례는 인터넷을 통해 불링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Dehue et al., 2008).

성별로 봤을 때, 남학생들은 불링가해경험이, 여학생들은 불링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음. 또한 인터넷상의 불링은 전통적 불링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음. 다시말해, 물리적 공간에서 불링가해경험이 많을수록 인터넷을 통한 불링가해경험도 높았음. 또한 물리적 공간에서 불링피해를 많이 당할수록 인터넷 상에서도 불링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연구는 부모조사도 병행했는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사이버불링에 관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Dehue et al., 2008).

2. 사이버불링 원인 및 실태

영국 연구

영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전통적 불링과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불링 간에 관련성이 높았음(Smith et al., 2008). 또한 여학생들이 전통적 불링과 사이버불링의 피해를 남학생보다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통적 불링과 다르게, 사이버불링은 학교 안보다는 학교 밖에서 더 많이 발생했음.

2. 사이버불링 원인 및 실태

영국 연구

Beatbullying(2012)이 최근 펴낸 사이버불링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4,600명의 중, 고등학생 중 28%의 응답자들이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이버불링 유형 중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자신을 놀리는 텍스트 메시지를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유형은 소셜네트워킹 프로파일을 통해 역겨운 코멘트를 받는 것이었음.

성별로 볼 때 여학생(32%)이 남학생(23%)보다 더 많이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사이버불링이 일어나는 플랫폼으로는 페이스북과 MSN 메신저가 가장 많았음.

전체응답자의 17%가 사이버불링가해자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로는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39%)가 가장 많았고 단지 장난으로 했다는 응답(26%)이 그 뒤를 이었음.

사이버불링을 당한 학생들의 경우 그 후유증도 심각했음. 20%의 학생들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이 꺼려진다고 답했고 19%의 학생들은 자신감과 자기존중감의 감소를 경험했음. 또한 14%의 학생들은 안전치 못하다는 것을 느꼈음.

한편 학생들은 사이버불링대책으로 보다 개선된 사이버불링 신고체계를 제시했음.

2. 사이버불링 원인 및 실태

미국 연구

미국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의 응답자들은 지난 한달 동안 두 번 이상 사이버불링가해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음 (Patchin & Hinduja, 2011). 반면, 전통적 불링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1%**였음. 이 연구에서도 전통적 불링과 사이버불링 간의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남 (Patchin & Hinduja, 2011).

미국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SNS**사이트에 개인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며 채팅룸에 많이 참여한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위험에 더 노출된 것으로 나타남 (Mesch, 2009)

2. 사이버불링 원인 및 실태

캐나다 연구

캐나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사이버불링의 원인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재미와 가정문제를 꼽았음 (Li, 2010). 즉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은 학교나 가정에서 사이버불링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 사실을 교사나 상담원에게 알리겠느냐는 질문에 **80%** 가량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점. 그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가 사이버불링을 멈추기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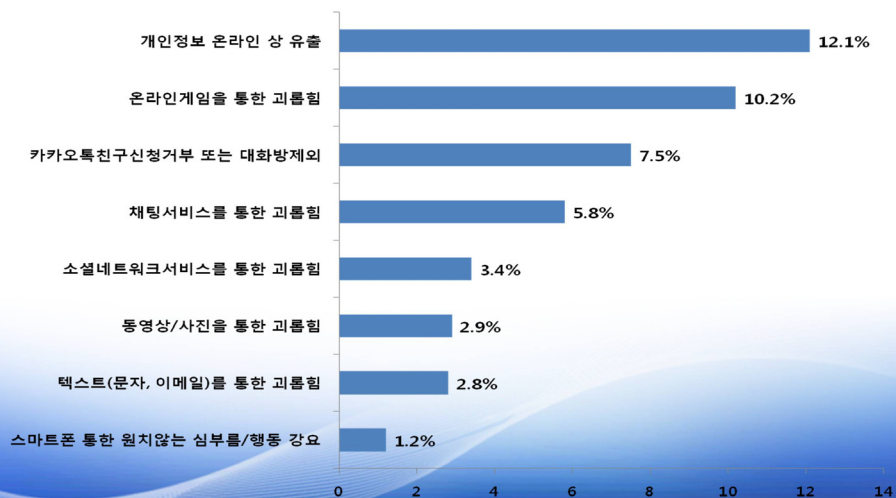
3. 사이버불링 실태 조사결과

◆ 응답자 인적사항

		사례수(명)	백분율(%)
전체		4,000	100.0
성	남자	2,166	54.1
	여자	1,834	45.9
교급	중학교	2,000	50.0
	고등학교	2,000	50.0
학년	중1	659	16.5
	중2	680	17.0
	중3	661	16.5
	고1	665	16.6
	고2	709	17.7
	고3	626	15.7
가정 유형	양부모	3,375	84.4
	한부모	399	10.0
	조손가정	64	1.6
	기타	151	3.8
	모름/무응답	1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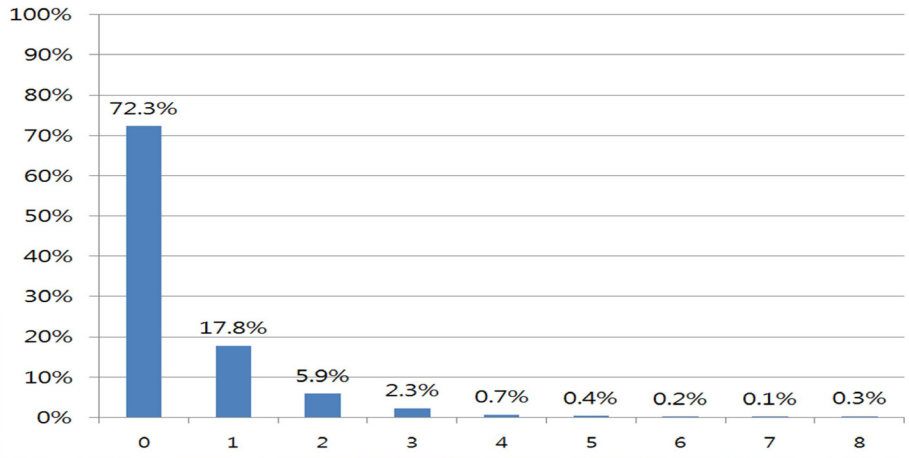
3. 사이버불링 실태 조사결과

◆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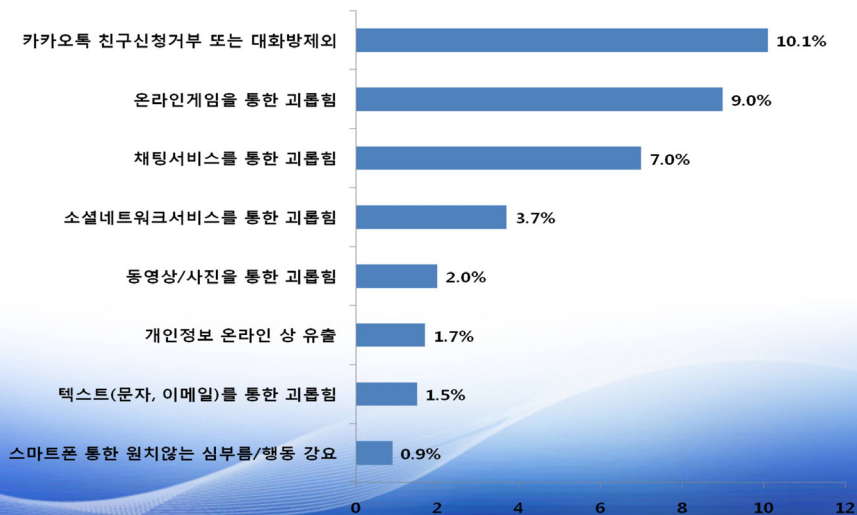
3. 사이버불링 실태 조사결과

◆ 사이버불링 피해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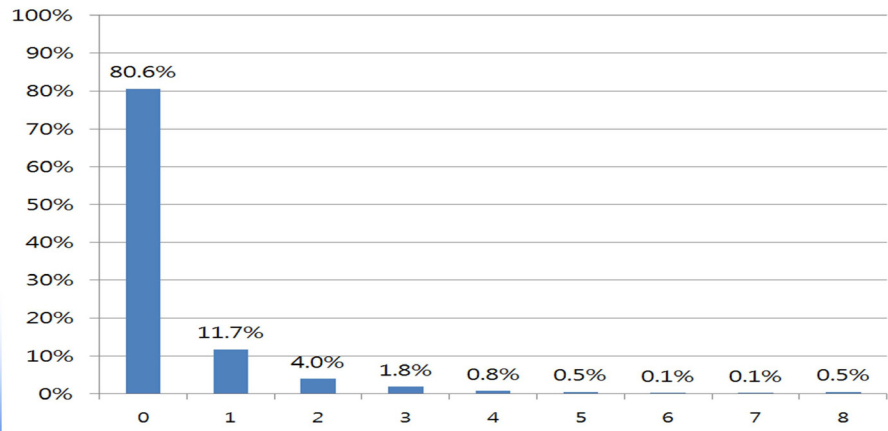
3. 사이버불링 실태 조사결과

◆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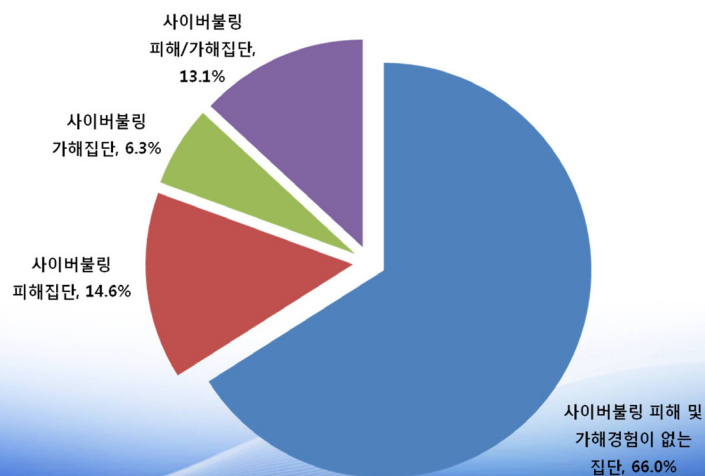
3. 사이버불링 실태 조사결과

◆ 사이버불링 가해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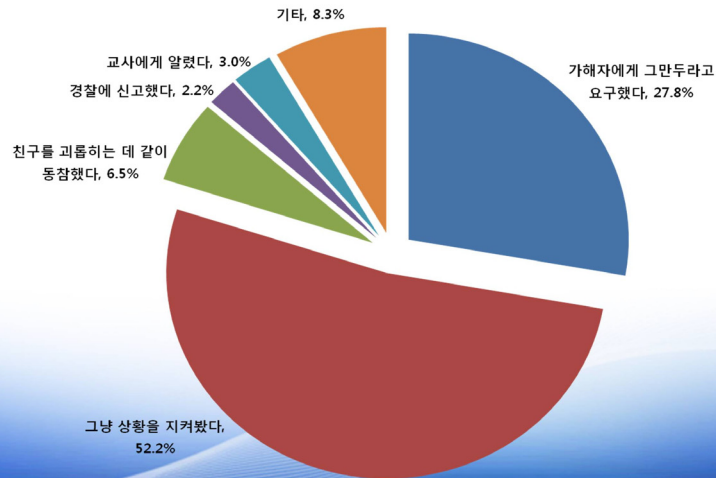
3. 사이버불링 실태 조사결과

◆ 사이버불링 집단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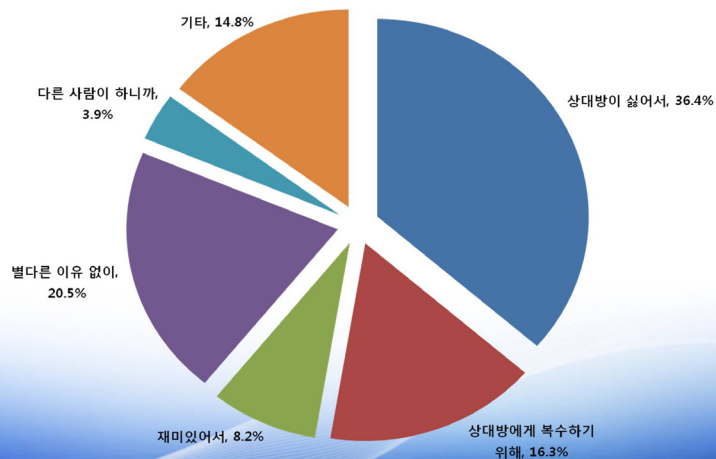
3. 사이버불링 실태 조사결과

◆ 사이버불링 피해 목격시 행동



3. 사이버불링 실태 조사결과

◆ 사이버불링 가해이유



3. 사이버불링 실태 조사결과

◆ 사이버불링과 오프라인학교폭력 간의 상관관계

	사이버불링피해경험	사이버불링가해경험	학교폭력피해경험	학교폭력가해경험
사이버불링피해경험	1			
사이버불링가해경험	.648**	1		
학교폭력피해경험	.457**	.447**	1	
학교폭력가해경험	.419**	.448**	.644**	1

*p<.05, **p<.01, ***p<.001

3. 사이버불링 실태 조사결과

◆ 미디어관련 변인이 사이버불링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인구학적 변인	성	.241	.127	.078
	교급	.208	.111	.072
매체이용	채팅	.029	.035	.032
	SNS	-.015	.034	-.018
	온라인게임	-.011	.034	-.014
미디어교육	사이버불링 교육	.075	.083	.038
	미디어제작 교육	-.107	.080	-.049
	사이버윤리 교육	-.046	.078	-.025
부모중재	제한적 중재	.072	.065	.043
	기술적 중재	.042	.072	.022
	적극적 중재	.008	.073	.004
	중재 안 함	-.011	.058	-.007
사이버윤리		-.122	.101	-.043
사이버자신감		.141	.054	.091**
사이버불링 가해경험		.599	.034	.630***
수정된 R제곱			.430	
F값			26.432***	

3. 사이버불링 실태 조사결과

◆ 미디어관련 변인이 사이버불링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인구학적 변인	성	-.231	.133	-.072
	교급	.073	.117	.024
매체이용	채팅	.029	.037	.031
	SNS	.030	.036	.033
	온라인게임	.038	.035	.043
미디어교육	사이버불링 교육	-.055	.087	-.026
	미디어제작 교육	.138	.083	.060
	사이버윤리 교육	-.011	.082	-.006
부모중재	제한적 중재	-.023	.069	-.013
	기술적 중재	.060	.076	.030
	적극적 중재	.106	.076	.052
	중재 안 함	.017	.061	.010
사이버윤리		-.286	.105	-.096**
사이버자신감		-.037	.056	-.023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659	.037	.626***
수정된 R제곱			.435	
F값			26.871***	

3. 사이버불링 실태 조사결과

◆ 심리적변인 및 부모관련 변인이 사이버불링 피해에 미치는 영향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학교생활만족도		-.143	.059	-.082*
공감	정서적 공감	.152	.047	.112***
	인지적 공감	-.050	.056	-.032
부모애착		-.021	.063	-.016
부모신뢰		-.051	.055	-.042
수정된 R제곱			.016	
F값			4.532***	

*p<.05, **p<.01, ***p<.001

3. 사이버불링 실태 조사결과

◆ 심리적변인 및 부모관련 변인이 사이버불링 가해에 미치는 영향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학교생활만족도		-.031	.088	-.014
공감	정서적 공감	.101	.069	.060
	인지적 공감	-.228	.077	-.124**
부모애착		-.073	.088	-.044
부모신뢰		-.062	.077	-.041
수정된 R제곱		.018		
F값		3.813***		

*p<.05, **p<.01, ***p<.001

4. 논의

함의

- 학교폭력과 사이버불링과의 높은 상관관계
- 사이버불링피해를 당하거나 사이버불링을 목격했을 경우 부모나 교사에게 이를 알리는 경우는 드물어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피해를 당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부모나 교사에게 알려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인지적 공감능력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사이버불링에 가담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친구를 배려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공감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사이버윤리의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음.

부록1. 사이버불링 상담 및 신고센터

	관련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
상담/신고	안전Dream(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 지원센터)	www.safe182.go.kr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www.singo.or.kr
	스톱불링	www.stopbullying.or.kr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www.cyber1388.kr
	Wee 프로젝트	www.wee.or.kr
	서울강남교육지원청 wee센터	http://www.knwee.kr/home ☎1588-7179
	학교폭력 SOS 지원단	http://www.jikim.net/sos ☎1588-9128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www.teen1318.or.kr ☎02-2285-131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www.kyci.or.kr ☎02-730-2000
	헬프콜 청소년전화	http://1388.kyci.or.kr ☎1388
	원스톱 인터넷피해구제센터	☎1377
	학교폭력 긴급전화	☎117
	청소년모바일문자상담	#1388
	학교폭력 문자신고	#0117

부록2. 사이버불링 예방 어플리케이션

종류	설명
모바일 가디언 (Mobile Guardian)	<블랙스톤>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자녀의 학교폭력징후 감지, 자녀 고민 감지, 자녀 위치 실시간 확인, 예약 시간 자녀 위치 자동 알림, 자녀가 설치한 유해 APP 설치정보, 자녀 위험 상황시 위급상황 SOS발송 등 위함요인을 24시간 밀착 감지하여 보호자에게 해당내용을 알려주는 스마트 자녀 지킴이 서비스. 출처: http://www.mguardian.co.kr (2014년 2월 20일 인출)
마스크 챗 (MASK CHAT)	<레드핀>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기본적으로 1대1채팅이 가능한 의사소통 도구이지만, 카카오톡과는 달리 실시간 익명 대화 가능한 신형 모바일 메신저임. 신변노출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를 그리고 이를 지켜만 보던 방관자들이 익명을 통해 사이버불링피해상황을 타인에게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출처: http://www.maskchat.co.kr (2014년 2월 20일 인출)
117 CHAT	<서울경찰청>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서울지역의 경찰관과 학생들이 익명으로 실시간 신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익명보장 신고 어플리케이션. 이를 통해 117센터는 경찰청과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24시간 채팅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서울지역에서만 실효성이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출처: http://nstore.naver.com/appstore/web/detail.nhn?productNo=652906 (2014년 2월 21일 인출)
스쿨보안관	<위그시스웍스>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중독성 강한 게임 콘텐츠나 무분별한 채팅, 불건강한 커뮤니티 활동, 폭력적 콘텐츠, 불법유해 콘텐츠 등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차단하거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서비스임. 부모를 위해서는 자녀의 위급 상황시 GPS를 기반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SOS 호출기능을 통해 현장을 청위와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줌.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유심 감지를 감시하고 유해단어를 체크하여 통보해줌. 이 외 스마트폰 중독 방지 기능도 있음. 출처: http://스쿨보안관.kr (2014년 2월 20일 인출)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일밤>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학교폭력사전감지 기능, 자녀고민감지 기능, 실시간 위치조회 기능, 등하교 등 예약시간 위치 알림 기능, 유해콘텐츠 확인 기능, 긴급상황 SOS기능 등 자녀의 위험징후를 24시간 감지하여 발견 즉시 부모에게 알려주는 종합 자녀보호 어플리케이션. 출처: http://cafe.naver.com/smartbodyguard (2014년 2월 20일 인출)
굿바이 학교폭력	<교육부>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2011년 12월에 보급한 학교폭력 예방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2012년 9월 재배포함.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둔 긴급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긴급전화 기능', 학생의 학교폭력 징후를 테스트한 후 학생지도에 참고 할 수 있는 '함께 확인해요' 기능,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상담 서비스를 일원화한 '고민을 나눠요' 기능, 학교폭력 예방 교육자료들이 탑재되어 있는 '미리예방해요' 기능,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과부의 최신 정책과 소식을 제공해주는 '정보를 나눠요' 기능 이렇게 총 5가지의 기능을 제공함. 출처: http://www.stopbullying.or.kr/goodbye_app (2014년 2월 20일 인출)
클래스팅 (CLASS TING)	인천 동북초등학교 조현구 선생님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class+meeting의 조합으로, 선생님과 학생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고 학생들 간의 직접 대화도 가능한 교육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비밀상담이 가능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상담이 가능하고, 학교폭력 문제를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음. 이 뿐 아니라 무료 문자 서비스, 스마트 달링팅, 클래스 미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도 함. 출처: http://www.classing.com (2014년 2월 20일 인출)

◆ 지정토론 ◆

1. 오성배(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2. 조지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3. 김봉섭(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역기능대응부 부장)
4. 조주은(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5. 김승혜(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부장)
6. 진달용(캐나다 Simon Fraser University)



학교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책방안에 관한 토론

오 성 배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학교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책방안에 관한 토론

오 성 배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1 들어가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조). 이러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근절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의 책무(법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제7조), 학교폭력 예방교육(제15조) 등 다양한 규정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특히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제2조).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 실태 및 특성”에 관하여 발제자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최근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보유가 많아지면서 SNS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사이버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개연성이 높으며, 그 피해는 신체에 가하는 폭력 못지 않게 심각하기에

학부모와 교사가 이러한 스마트기기의 역습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제 및 토론내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 대책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 추진 현황

사이버폭력에 관한 개념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디지털기구나 정보화기기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 우연이 아닌 의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제자께서는 사이버폭력 피해원인과 가해원인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사이버폭력 피해원인으로서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 이용 등 매체관련 변인, 즉 SNS를 이용하거나 주중에 온라인 채팅룸을 자주 방문하는 청소년일수록 사이버폭력 위험에 높게 노출될 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신나민·안화실, 2013).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원인으로 학교만족도나 부모와의 관계 등이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론하였고, 이는 학교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낮고, 부모와의 친밀도가 떨어질수록 사이버폭력을 더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버폭력 가해원인은 피해요인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며, 매체관련 변인, 부모 관계, 학교만족도 등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디지털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높아지고(신나민·안화실, 2013) SNS를 이용한 대화가 많을수록 가해경험이 높다(이창호·이경상, 2013)고 하셨습니다.

선행연구 등을 종합해 보면, 부모와의 애착은 사이버폭력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성동규 외, 2006), 부모와의 대화가 자유롭거나 개방적일수록 휴대폰을 활용한 언어폭력은 줄어들며(이정기, 2011), 아울러 즐거운 학교생활이나 원만한 교우관계 등 학교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가담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신나민·안화실,

2013;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또한 정보통신 윤리의식 수준이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서, 정보통신 윤리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성동규 외, 2006;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국내·외의 축적된 선행연구와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 사이에서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현실진단을 위하여 매년 2회에 걸쳐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456만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예방효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이버 폭력 관련 내용으로는 컴퓨터, 휴대전화(스마트폰)로 계속적인 괴롭힘 즉 인터넷 채팅, 이메일, 문자를 이용한 심한 욕설, 비방 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의 의식 및 태도의 전환을 위해 교과 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지속적인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수칙’을 제작하여 학교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바람직한 정보통신 윤리의식을 갖춘 진정한 디지털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윤리 교육사례 및 활용가이드를 2014년 4월에 개발을 완료하여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사례 80여건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에서 직접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특히 인쇄자료, PDF, eBook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후 에듀넷 홈페이지, 스톱불링 사이트 등에 탑재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학생이 교사나 학부모에게 폭력 사실을 쉽게 알리지 않는 이유로는 교사나 학부모로부터 인터넷접속 금지를 당하거나 휴대전화를 빼앗길까 두려운 마음에 다른 학교폭력 유형에 비해 교사나 학부모에게 알리는 비중이 적습니다. 교사나 학부모는 사이버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에 사이버폭력

관련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나 학부모로부터의 동조 혹은 지지적 대화가 중요하듯이 학생들의 사이버활동에 대한 교사나 학부모의 지지적 관심과 사이버폭력 발생 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용 원격연수 콘텐츠(기본·심화과정 2종), 학부모 연수용 콘텐츠(1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 및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및 문제행동 예방·대응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이며, 정보통신 윤리교육 관련 에듀넷 통합서비스를 개편하여 산출물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넷째,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학교환경에서의 예방교육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이 형사상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 네티켓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가치와 공감 기르기,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사용실천 선포식 등 범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 지자체, 언론, 기업, 시민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에 관한 캠페인의 지속적인 전개 및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은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인터넷·스마트 미디어 과다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사용실천 캠페인과 같은 자율실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문화의 정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가정은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며, 신고와 예방 교육이 필요하기에 교육부에서는 유관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신고방법이나 대응요령 등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미래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부처와의 협조를 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폭력 관련 리플렛, 동영상 자료, 교안 자료 등을 개발하여 학교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현장에서 교재 및 강사인력 등 요청시 적극 협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 나가며

사이버폭력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가해자의 익명성이 높으며, 면대면의 관계가 아닌 면대기계의 관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상환경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애매모호하고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타인에게는 무차별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폐해는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사이버폭력의 특성상 학교나 교실에 국한하지 않고 밤낮구분 없이 언제 어디서라도 사이버폭력이 가능하며, 가장 위험한 것은 사이버공간에 그 흔적이 영속적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심각성과 폐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에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에 사이버폭력 관련 예방대책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4월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시켰습니다. 2013년 7월 23일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새로이 반영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등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 학부모 및 일반 국민의 불안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통해 사이버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해 ①정부통신윤리교육, ②교사·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③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④사이버폭력 신고 예방 교육 등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학교폭력피해응답률 감소('13년 1차 2.2% → '13년 2차 1.9% → '14년 1차 1.4%) 기여하고 있으며,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감소('12년 1차 13.4% → '12년 2차 7.3% → '13년 1차 9.1% → '13년 2차 9.7% → '14년 1차 9.3%)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에 수립한 대책과 세부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및 현장적합성이 높은 시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

조 지 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

조 지 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1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및 특수성

최근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초·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1.5%에 이른다고 한다. 2011년 청소년 스마트폰 보유율 36.2%와 비교하면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14년 현재는 더욱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휴대전화 기능은 ‘채팅’이 26.7%이고, 학생들의 77.1%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만으로도 최근 몇 년간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생들의 의사소통 활동이 매우 활발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주요 활동 공간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던 학교폭력이 사이버공간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 역시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으나,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은 오프라인상의 학교폭력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심리적 피해 정도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발제자 연구에서도 보듯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피해자가 된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적어도 집에서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집에서조차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온갖 저주와 협박, 욕설에 시달리게 되었다. 심지어 먼 곳으로 이사를 가도 피해는 멈추지 않는다. 더구나 사이버불링 피해내용은 사이버상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더욱 위축된다. 최근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대다수가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사이버폭력 피해 및

1) 2013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 후 초등학생의 70.3%, 중학생의 66.0%, 고등학생의 56.2%가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경험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발제자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학생의 이러한 심리적 고통이 또 다른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발제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이버불링에 대한 피해 신고 방법이나 대응요령 등 적극적인 교육과 대응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는 정부에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2 사이버불링에 특화된 신고·감지 시스템 필요

사이버불링의 특성 중 무엇보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피해학생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목격한 학생들이 사이버불링을 보고도 방관하는 비율이 특히 높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11년 말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부처 합동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덕분에 현재는 학교폭력이 다소 안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 대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학교폭력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이 바로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에 경찰청·교육부·여가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12. 2월), 117 신고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설치하였다('12. 6월). 그리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신고는 117'임을 꾸준히 홍보한 결과 '11년에 일평균 0.8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가 '14년 현재는 일평균 206건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 실태조사('14년 1차 조사)를 보더라도 피해 후 미신고 비율은 21.6%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불링의 경우 피해학생의 41.8%가 아무런 조치 없이 대응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그 비율이 평균 학교폭력에 비해 2배 가까이 되고, 그 이유에 대해 절반 이상(64.4%)이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 다음으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10.1%)라고 응답하고 있다(2013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사이버불링을 목격한 경우에도 절반 이상(52.2%)이 그냥 상황을 지켜봤다고 응답하고 있어 방관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사이버불링 피해를 적극적으로 감지하여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 「117 채팅신고 앱」 개발, 사이버불링 피해신고 유도

경찰청에서는 사이버폭력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17 채팅신고 앱」을 개발하고 있으며, 11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누구나 「117 채팅신고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117 상담원과 실시간 1:1 채팅 상담을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전화보다 채팅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사이버불링 피해시 117로 전화를 하는 것보다 채팅을 통해 상담하는 것이 훨씬 편하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1 채팅 뿐 아니라 동영상·사진을 바로 상담사에게 전송할 수도 있어 피해 화면을 캡처하여 상담사와 실시간 공유하면서 상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불링 신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117 채팅신고 앱」은 이미 서울청에서 시범운동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13. 6월부터 「117 CHAT」이라는 명칭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14년 8월 현재 11,457명이 다운받았으며, 2,820건의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처리하였다.

신고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것은 117 CHAT을 통해 신고된 내용이 117 전화를 통해 신고된 내용에 비해 모욕 등 언어폭력 접수 비율이 특히 높다는 점이다. 117 전화로 접수된 신고 중 ‘모욕등’의 비율은 35.3%이나, 117 CHAT으로 접수된 신고 중에서는 47.2%를 차지하였다. 순위면에서도 전화신고에서는 ‘폭행’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채팅신고에서는 ‘모욕등’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이버폭력은 형법상 죄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117센터에서 사이버폭력으로 별도 유형 분류를 하고 있지 않아 사이버폭력 신고 비율을 ‘모욕등’의 비율로 유추할 수밖에 없으나, 최근 ‘모욕등’ 신고 대부분이 사이버 언어폭력 또는 사이버 언어폭력을 수반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채팅신고의 경우 전화신고에 비해 사이버폭력 신고가 많이 접수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Ⅰ 서울 117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유형별 ('14. 1~8월) Ⅰ

구분	계	폭행	협박	공갈	성폭행	모욕등 *	교사 관련	왕따	기타
117 전화	10,722	3,281	520	334	166	2,799	236	586	2,800
점유율(%)	-	41.4	6.6	4.2	2.1	35.3	3.0	7.4	-
117 CHAT	1,932	216	60	32	9	419	17	135	1,044
점유율(%)	-	24.3	6.8	3.6	1.0	47.2	1.9	15.2	-

* 모욕등 : 모욕·명예훼손

나. 「학교전담경찰관-학생」간 SNS 친구맺기 활성화, 상담을 통한 피해 감지

경찰은 현재 학교폭력 업무만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 '12년에 처음 도입한 이후 그 성과를 인정받아 현재 총 1,078명 정원을 확보하여 1인당 10개교를 담당 체계를 구축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은 警·學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폭력서클 해체, 가·피해학생 선도·보호, 학교폭력 수사, 예방교육, 자치위 참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최근에는 기본적인 임무 수행 외에 급증하는 사이버불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학생」 SNS 친구맺기를 통한 자연스러운 학생 상담을 장려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면 상담보다는 채팅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들의 SNS를 살펴봄으로써 자살·가출과 같은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미리 예방에 나서기도 한다.

금년 들어 학교전담경찰관이 카카오톡 등 SNS 친구맺기한 학생은 총 173,763명이고, 이를 통해 총 1,613건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사이버불링으로 고민하던 학생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급 카카오톡에서 소위 ‘떼카’를 당하던 학생이 학교전담경찰관을 대화방에 초대하여, 전담경찰관이 즉시 사이버불링을 중단시키고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 주요 사례 〉

- 고교 1학년인 피해자는 2013. 7. 15~2014. 8. 20. 1년이 넘는 기간 지속적으로 중학교 3학년 재학 당시 같은 반 친구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를 헐담하는 글, 욕설 및 왕따를 당하였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 집과 피해자를 몰래 촬영, 합성하여 혐오스런 사진을 채팅방에 게재. 피해자는 손목을 긋는 자살시도를 하고 한여름에도 커튼을 치고 창문을 열지 못하며 그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음.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로 <자살자살자살자살자살자살자살자살자살 신고할 생각 보단 상담받고 싶어요.>라는 내용을 남김
- 피해학생과 부모 상담 후, 각기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해학생 5명과 범죄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부모를 순차적으로 불러 피해 증거자료를 열람케 하고, 충격을 받은 가해학생 부모들은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눈물의 사과를 했으며, 가해학생들은 화해 후 재발 방지 서약서 및 사과문 작성. 이후 학교폭력 역할극 5차시 참석하여 학교폭력 사례별 체험. 피해자는 전담경찰의 지속적인 상담과 함께 자신감·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참여.

다. 「사이버 또래지킴이」 조직, 학생 스스로의 자정 능력 강화

학교전담경찰관이 아무리 학생들과 SNS를 통해 상담하고 살펴본다 해도 은밀하게 발생하는 학생간 사이버불링을 외부에서 모두 감지하고 해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사실 학교폭력은 학생간 문제라는 점에서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또래상담·또래조정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사이버불링을 예방하는 별도의 또래지킴이 정책이나 기존의 또래 활동을 사이버불링 예방과 연계하는 방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금년 들어 초·중학교 335개교 7,132명의 학생(학급별 1~2명)들로 사이버불링 ‘또래지킴이’인 「사이버폴」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이버폴」로 임명된 학생들은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또래상담자’로 활동하면서 학교전담경찰관과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학교폭력 사안 등 인지시 학생들 사이에서 중재에 나서거나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역할 모델을 잘 다듬어 정착시켜 나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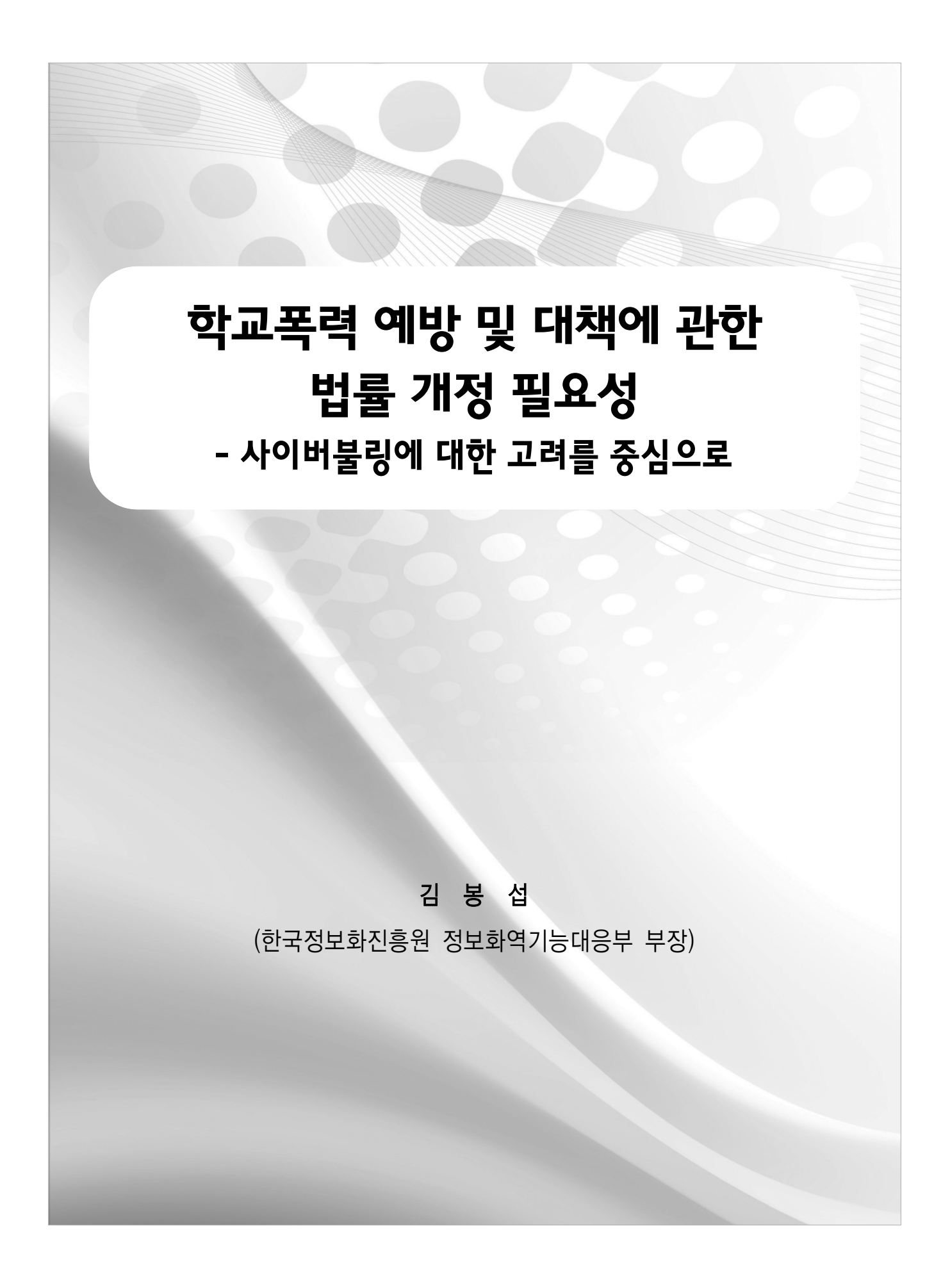
〈 주요 사례 〉

- 초등학교 여학생 사이버폴이 친구들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를 나누던 중 ‘얼어죽을 새끼’, ‘아가리 꼬매서 쓰레기통에 처 넣어야 해’ 등의 욕설이 오가는 것을 보고 해당 화면을 캡처하고 학생 아이디는 모자이크 처리하여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카카오톡 상담 요청, 전담경찰관이 교사와 협의한 후 해당 학급에 대한 예방교육 및 바른말 쓰기 교육 등 실시

3 마치며...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검찰에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을 꾸려 SNS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발표하여 인터넷상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없는 말과 행동 등이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서 사회구성원간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적 자본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이버불링은 학생들의

안전과 정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립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제자 연구 결과와 같이 학생들에게 건전한 윤리의식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등을 배양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교육당국에서의 근본적인 교육·예방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

- 사이버불링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김 봉 섭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역기능대응부 부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 - 사이버불링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김 봉 섭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은 일상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정보생산,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분야에 IT기술이 도입되면서 편리성과 효율성이 극대화 되고 있다. 반면, 부작용 또한 새롭게 등장하였다. 불건전 정보 유통, 과도한 IT의존 현상, 사회적 갈등 및 불신 심화 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정보화 역기능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역기능은 아직 정서적 인지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심각하다. 그중에서도 최근 많은 사회적 관심과 우려를 받고 있는 것이 사이버불링이다. 청소년들에 있어 사이버불링은 면대면 폭력보다 소외감, 인간성 상실, 무력감 등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이버불링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폭력 현상이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의미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장소)에서 개인 또는 집단(주체)이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도구)를 통해 특정인을 대상(객체)으로 문자, 사진, 이미지 등 상징적 언어(수단)를 활용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적인 공격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에 따르면 사이버불링을 사이버따돌림으로 규정하고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록 용어상에 차이가 있지만 사이버불링은 행위의 폭력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이나, 수단으로써 정보통신기기, 그리고 사이버라는 공간적인 특성이 강조되는 점이 전통적인 학교폭력과 구분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은 지난 2011년 12월 대구에서 일어난 중학생 자살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집단적인 괴롭힘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크게 높아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폭법을 통해 사이버따돌림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사이버불링이

법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이버불링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불링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이 남아 있다. 첫 번째는 사이버불링을 포함한 학교폭력 정책의 근본 목적에 대한 취약성이다. 학폭법에서 정한 법 추진의 목적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학교폭력의 상황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관계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불링은 반드시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사와 부모, 학생과 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의 상황을 너무나 협소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은 없지만 몬타나주를 제외한 49개주에서 반불링법을 제정하여 불링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반불링법의 제정 목적으로 보면, “불링으로 인해 학습과 학교안전, 학생참여 그리고 학교환경을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가·피해 학생간의 분쟁이 아닌 불링으로 인한 보다 고차원적인 학습권과 학교환경 등에 미치는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이 교사를 불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학생들을 사이버불링하는 경우도 모두 법적으로 제한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사이버불링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생들에 의해 교사를 사이버불링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사례를 반영한 학폭법의 개정의 필요하다고 보인다. 아울러 사이버불링의 경우 가·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들도 “누가 나를 사이버불링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상존하다고 하여 단순히 가·피해 상황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을 포함한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학습권, 학교 환경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사이버불링의 주체와 관련한 문제로 학폭법에 따르면 사이버불링은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음란 폭력 정보에 대해서는 피해 대상이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이버따돌림은 가해(학생들)와 피해(특정 학생들) 주체를 각각 집단간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불링이 일대일, 다대일, 다대다, 일대다 등 다양한 양상이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따돌림의 내용도 오히려 괴롭힘에 더 가까운 내용으로 현실과 맞지 않다. 게다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불링의 경우 와이파이스터, 소액결제 강요 등 사이버갈취와 같은 새로운 유형도 나타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내용으로의 법 개정의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학폭법 구성을 학교폭력과 사이버불링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처벌과 관련한 내용이다. 학폭법에 따르면 현재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서면사과에서부터 9호 퇴학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면대면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경우 가·피해 학생을 격리하는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이 사이버불링의 경우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24시간 어디서든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서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불링 가해자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휴대 또는 인터넷 사용 금지와 같은 사이버공간에서의 구분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사이버불링을 사회적 죽음(Social death)으로 인식한다. 또래관계를 중요시하는 청소년기에 관계적 고립은 죽음과 같은 상태라고 청소년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래 관계로부터 배제되었다는 느낌은 좌절과 불안, 그리고 자존감의 상실을 가져온다. 가해자를 특징하기 어려운 사이버불링의 특성상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감 또한 청소년기에는 공포로 다가온다. 이처럼 사이버불링은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한 관계적 폭력으로 정서적·심리적 상해로 작용한다. 우리가 사이버불링을 결코 사소하게 인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에 비해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해나 인식은 매우 부족하다. 실제로, 사이버불링에 대한 부모와 자녀간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6%인 반면, 부모의 4.3%만이 자신의 자녀가 사이버불링 가해자임을 알고 있었다. 또한, 사이버불링 피해자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3%인 것과 비교하여 부모의 11.8%만이 사이버불링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문화와 성인문화가 서로 단절되어 있으며, 집단주의 문화로 인해 피해 사실이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이버불링을 청소년기의 통과의례로 치부하거나, 청소년이 성장하는데 피할 수 없고 교훈적인 측면이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사이버불링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이버불링은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다양하게 진화할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이 휴대전화에 카메라 기능이 부착되면서 타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놀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등장하였다. 또한 카카오톡 서비스가 나타나자 상대방을 카톡 대화방으로 초대한 후 집단으로 욕설을 퍼붓는 ‘떼카’등이 생겨났다. 이미 소셜미디어도 청소년들은 사이버불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새로운

사이버불링 발생의 전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과도한 학업부담과 선행학습 등으로 놀이 공동체가 붕괴되어 청소년들이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그 결과 갈등관리와 같이 대인관계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지 못해 사소한 갈등이 심각한 폭력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어린 시절부터 면대면이 아닌 스크린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습득한 청소년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표정을 읽는 능력이 부족하여 폭력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우가 나타날 것 같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서 논의되었던 것 같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올바른 법체계 마련이다. 법 자체의 처벌적 의미보다는 법이 규정하는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가치 때문이다. 또한,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규범을 확립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용자 스스로 자기통제 능력을 배양하고 정보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를 포함한 청소년 이해관계자들은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School Cyberbullying
(학교 인터넷따돌림)
실태와 대책방안”에 대한 토론**

조 주 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School Cyberbullying(학교 인터넷따돌림) 실태와 대책방안”에 대한 토론

조 주 은(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 개 요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사이버 따돌림”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관련 범죄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만, 현장(off-line) 학교폭력에 대한 기존 조항에 사이버폭력에 관한 정의만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폭력의 대응·처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관련 규정으로는 동법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을 들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폭력 대응·처벌 규정은 <표 1>과 같다.

<표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폭력 대응·처벌 규정

구분	내 용	비고
기본계획 수립	•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
학교폭력 대책 거버넌스	•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	제7조
	•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 설치 (각 시·도)	제9조
	•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시·군·구)	제10조의 2
	•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설치 (각 학교)	제12조
교육감의 의무	•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등	제11조
	•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등 • 교육감은 위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제11조의2
전담 상담교사 및 전담기구	• 학교의 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둠 •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	제14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은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제15조
피해학생의 보호	•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등	제16조

구분	내 용	비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제17조
학생 보호인력의 배치	•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 •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제20조의5

2 입법과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규정은 제18대 국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814700)이 본회의에서 의결(2012. 2. 27.)되면서 추가되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안되었고, 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 이유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연이은 학생의 자살로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의 치유 부담을 완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첫째, 기존의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둘째, 학교폭력과 관련한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어 학교폭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셋째,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상담·치유를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치유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넷째,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문제시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고자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섯째,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교감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여섯째,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감이 비용을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일곱째,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무화하여 폭력행위는 처벌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14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여 가해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하고자 함. 또한,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의무화하여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여덟째, 기존의 가해학생의 전학 및 퇴학조치에 한정되었던 재심청구를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허용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아홉째, 정보통신망을 학교폭력 예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존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따돌림 규정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제4호)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 대표가 공동 위원장이 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라.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함(안 제10조의2 신설)

마.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상담·치유를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8항, 제9항)

바.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0항, 제11항)

- 사.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 조치 등을 위한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신설)
- 아.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 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교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 차.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학부모를 추가함(안 제15조제2항)
- 카.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제3항)
- 타.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감이 부담한 후 구상권을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 파.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내릴 것을 의무화하고,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병과하거나 가중 조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제2항)
- 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14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함(안 제17조제6항).
- 거.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제9항, 제22조제2항)
- 너.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기회를 피해학생까지 확대 함(안 제17조의2)
- 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의3 신설)
- 러. 학교폭력 예방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며,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신설)

제19대 국회에서 “사이버 따돌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3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해외 입법 사례

1) 미국

□ 주(州) 정부에서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사이버불링, cyberbullying)*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연방헌법의 가치와 충돌할 우려가 있어서 연방 법률로는 제정되지 못함

※ 사이버불링은 주로 청소년 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두려움, 모욕, 고통을 주는 SNS,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시지, 웹사이트, 전자우편 등의 전자통신 행위를 의미함

※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을 사이버불링으로 표시함

○ 「Title 18 of the United States Code」를 개정한 연방 수준의 「사이버불링 법안」(Megan Meier Cyberbullying Prevention Act. H.R.6123('08년), H.R.1966('09년))은 연방 의회를 통과하지 못함¹⁾

○ 그 대신 각 주 정부는 별도의 주법(state law)으로 사이버불링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현재 사이버폭력을 규정하고 있는 주는 18개임²⁾

□ 뉴욕주의 사이버불링 관련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뉴욕주의 Monroe County는 2012년 6월 사이버불링을 범죄로 다루는 자치 규정을 통과시킴
- 사이버불링에 대해 최고 \$1,000의 벌금이나 1년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³⁾

○ 뉴욕주는 사이버불링을 규제하는 「학생 존엄성 법률」(Dignity for All Students Act)을 개정해서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사이버불링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사이버불링을 목격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처벌, 사이버불링 대응에 필요한 기본 방침(protocol) 제공 등도 규정하고 있음⁴⁾

1) 이 법안은 미주리주의 어느 십대 청소년이 이웃 어른들의 사이버불링으로 자살한 사건 이후에 발의되었으며, 「형법」에 규정된 ‘공갈 및 협박’의 10가지 항목에 이어 새롭게 11번째 항목인 ‘사이버불링’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State Cyberbullying Laws』, internet release, 2013. 12.
〈http://www.cyberbullying.us/Bullying_and_Cyberbullying_Laws.pdf〉 각 주별 자세한 현황은 〈부록〉의 ‘Include cyberbullying’ 항목을 참고

3) 출처 〈<http://rochester.twcnews.com/content/news/588465/new-york-state-to-pass-first-cyber-bullying-law/>〉

4) 정한라, 「국내외 사이버폭력 사례 및 각국의 대응방안」, 『Internet & Security Focus』,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10.

<표 2> 뉴욕주 사이버불링 규제 법률의 주요 내용

(Chapter 102 Laws of 2012)

구분	주요 내용
사이버불링 개념 추가	• 사이버불링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괴롭힘의 일종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해치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의미함
사이버불링에 대한 보고와 처리	• 교장과 학교의 담당관은 사이버불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의무가 있음 • 사이버불링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즉시 보고서를 검토해야 함 • 사이버불링으로 인해 교육 환경이 나빠지고, 피해학생에게 정신적·감성적·신체적 위험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학교 당국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함
사법처리	• 교장과 담당관은 해당 폭력행위가 범죄의 요건을 구성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처리를 요구해야 함

자료: 뉴욕주 교육부 <<http://www.p12.nysed.gov/dignityact/documents/DignityActBrochureUpdateFinal.pdf>>

□ 캘리포니아주의 사이버불링 관련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8년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이버불링을 규제하는 입법(California Assembly Bill 86 2008)을 추진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⁵⁾
- 이 법률은 사이버불링을 ‘전자적 방식에 의한 행동’(electronic act)으로 표현하지만, 앞서 살펴본 뉴욕주의 사이버불링과 동일한 의미임⁶⁾
 - 2013년 법률 개정으로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것’(originated on or off the school site)이라는 단서가 추가되었음⁷⁾
- 캘리포니아주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이버불링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두고 있고 전반적인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다루고 있으며, 예방교육과 같은 대응 방안 역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5)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Cyberbullying#Law_Enforcement:_Cyberbullying,2C_Cyberstalking_and_Electronic_Harassment>

6) 법률의 표현은 다음과 같으며, 흔히 사용하는 사이버불링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음. As used in this chapter, an “electronic act” means the transmission of a communic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message, text, sound, or image by means of an electronic devic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telephone, wireless telephone or other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 computer, or pager.

7) 자료 <http://leginfo.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320140AB256>

2) 캐나다

□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의 「사이버안전법」 제정⁸⁾

○ 캐나다 노바스코샤(Nova Scotia) 주(州) 입법부는 주 내에서 사이버불링으로 청소년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사이버안전법」 제정을 추진함

-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에서는 레테 파슨스(Lethe Parsons, 18세)가 또래 남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 현장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뒤 2013년 4월 7일 자살하는 사건 발생이 발생함
- 노바스코샤 주 정부는 레테 파슨스의 자살 발생 3주만에 사이버불링을 겨냥한 새로운 「사이버안전법」 제정안을 발표함^{13.4.26)}

○ 이 법은 2013년 5월 10일 주 의회를 통과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9세 이하의 가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
- 타인에게 사이버불링을 가하는 이는 일반처벌, 가중처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접근금지명령의 대상이 됨
- 사이버불링을 조사하기 위한 전문 조직으로 ‘Cyber SCAN’을 설립함⁹⁾
- 사이버불링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는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호 조치를 위반하여 사이버불링을 저지를 경우 최고 \$5,000의 벌금이나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캐나다 연방정부는 사이버불링 규제법인 「Protecting Canadians from Online Crime Act(Bill C-13)」 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통과되지 않고 있음

○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¹⁰⁾

-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적인 이미지(intimate image) 유포를 금지를 강력하게 규제함

8) 한국인터넷진흥원, 『Internet & Security Weekly』, 2013년 5월.

9) 자료 <<http://antibullying.novascotia.ca/cyber-safety-act>>

10) 자료 <<http://www.parl.gc.ca/HousePublications/Publication.aspx?Language=E&Mode=1&DocId=6311444&File=30#2>>

-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이미지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향후 이미지 유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율과 위반자에 대한 컴퓨터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또한 수사 기관에게 사이버불링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그러나 이 법안은 사이버불링을 지나치게 피상적으로 보고 있고, 정부의 인터넷 통신 활동에 대한 감독·개입·규제 권한을 강화시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의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음¹¹⁾

3) 영국

- 영국은 사이버불링을 규제하는 별도의 입법은 없고, 기존 법률의 해석을 통해 사이버불링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¹²⁾
- 또한 정부, 시민단체, 민간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불링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¹³⁾
- 영국 정부는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이버따돌림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광고주의 보이콧을 촉구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이 책임의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함
- 시민단체들도 항의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이버불링 근절을 요구함
- 민간(대표적으로 NoBullying.com)에서는 사이버불링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가이드 맵을 개발하여 제공함
- 가이드 맵에는 자녀가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착하는 방법과 자녀를 위해 취해야할 구체적인 부모의 행동이 명시되어 있음

11) 자료 <<http://www.theglobeandmail.com/globe-debate/columnists/maybe-one-day-revenge-porn-will-be-have-no-power/article15804000/>>

12) 자료 <<http://www.cybersmile.org/advice-help/category/cyberbullying-and-the-law>>

13) 정한라, 앞의 글.

4 개선방안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폭력의 수단과 피해의 양상이 현장 학교 폭력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학교폭력 피해자는 전학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단절될 수 있지만, 인터넷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이버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항상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온라인·SNS 등을 통한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근절을 위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시적 사이버 따돌림과 사이버 재산의 갈취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범위를 일부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나마 제18대 국회에서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내용이 관련 법률에 포함되면서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제19대 국회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입법발의는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의 논의도 활발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이버 따돌림” 관련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에 사이버폭력에 관한 것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예방교육 내용의 충실화를 위한 연구·조사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주체인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교의 장 등이 여전히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학교 안에서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주체들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해외 입법사례를 참조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학교, 피해학생, 부모 및 보호자, 경찰, 목격자 등의 대응요령과 의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전문가 확보, 충분한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사이버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연결해 주는 통로는 SNS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이기 때문에 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대응방안

김 승 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부장)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대응방안

김 승 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부장)

학교폭력은 청소년과 가정 나아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다양한 해결안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또한 청소년 사이버폭력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는 무형의 폭력이면서 일상화·통제불능·익명성·과급성·범죄 음습화 등의 여러 특징과 더불어 확산 및 진화되고 있다. 특히나 신체폭력 등 다른 학교폭력의 유형보다 해당 학생들이 죄책감을 덜 느끼며, 장난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많아 피해를 받고 모르고 지나가거나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어도 대처하기가 어렵다. 또한 사이버폭력은 형태가 심각한 피해나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개는 신체폭력, 따돌림 등의 다른 학교폭력 유형들과 복합적으로 가해지면서 그 심각성을 부과시키는 상호연관성이 많다. 따라서 단편적 접근이 아닌 예방부터 발생, 인식, 실태 파악 및 신고, 사안처리, 갈등과 분쟁, 피해자 회복 및 치유, 가해자 선도 등에 각 단계별로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수반하기에, 학교폭력은 단순한 한 가지 유형의 문제로만 분리되어 대응하는 것은 실질적인 대응이 될 수 없다. 또한 청소년과 그 주변자원인 가족, 학교, 또래 등을 함께 해결과 회복의 주체로 생각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은 전체적인 정책의 연계성과 지속성이 없으면 일시적·단편적 대응으로 그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제도적, 정책적 대처방안

1) 사이버폭력은 이미 유형별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제일 필요한 것은 비윤리적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사이버폭력 범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2) 통합적 접근과 해결이 관건- 2, 3차 피해 최소화.

단편적 접근이 아닌 예방부터 발생, 인식, 실태 파악 및 신고, 사안처리, 갈등과 분쟁, 피해자 회복 및 치유, 가해자 선도 등에 따른 각 단계별 통합적 시각과 대응책 필요.

3) 사이버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온라인상의 환경 순기능 및 대안 구축.

사이버 상에서 학생들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의 프로그램을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축 및 개선하는 것이 필요.

예) 카카오톡, 돈톡 등의 역기능적 사용에 대한 대책

4) 사이버폭력 신고 및 처리체계 강화. - 피·가해자들에 대한 처리뿐만 아니라 방관자들에 대한 신고 유도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며 온·오프라인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고로 인한 보복 범죄가 없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

5)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전반적인 보호와 선도 역할 부재

2 가정, 학교, 사회의 대처방안

1) 올바른 사이버문화 및 폭력예방을 위한 각 주체별 매뉴얼(교육) 강화.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 이수 의무화 필요. 현재는 학부모교육 수혜자가 한정적이므로 교육 대상의 확대와 보편화 필요.

2)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가정·사회 연계와 작동 강화

- 1차 가정의 예방과 대응(매우 중요한 주체)
- 2차 학교 및 학원 등 청소년들의 주생활 터전에서의 예방과 대응

- 3차 사회적 예방과 대응(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와 의식개선 노력, 인플루언스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및 지원강화 등)
- 4차 사이버폭력 발생 시 법률적·통합적 해결적 시스템 구축 및 강화

3) 실제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전문적 교육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임.

4)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 및 사안처리 어려움 발생.

- 사이버폭력만이 아닌 여러 유형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한 사안 처리가 아닌 피·가해 및 학교측의 복합적인 접근과 이해 중요함.

5) 오해나 갈등으로 야기된 사이버폭력과 의도성·고의성 있는 사례를 구분하여 이에 따른 개입방안 및 상담, 화해, 갈등해결, 처벌 등이 이루어져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음.

참고문헌

1.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3).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캐나다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실태 및 대책

진 달 용

(Simon Fraser University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캐나다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실태 및 대책

진 달 용 (Simon Fraser University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사이버 공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자연재해등과 같은 위기시에 신속하게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사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그러나, 최근 들어 심각한 정도로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사이버 공간이 동료 학생들을 집단 따돌림 (왕따)하는 새로운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에 이어, 페이스북,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급증하고 있는데, 해당 공간에서 동료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현상이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사이버 왕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분야 선진국중 하나인 캐나다의 경우 전통적인 물리적 왕따 현상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이버 왕따는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의 사이버 왕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핵심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캐나다는 다이얼 모뎀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던 시기, 10대 청소년들 사이의 온라인 남용으로 인한 왕따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왕따 (Cyberbullying)라고 명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또 사이버 왕따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몇 개 국가중 하나로서, 어느 나라보다 일찍 사이버 왕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과 정부정책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011년 Kids Help Phone (2012)이 서베이 조사를 실시했을 때, 응답자의 65%가 적어도 한차례씩은 사이버 왕따 대상이 됐었다고 밝혔다. 사이버 왕따는 특히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사이트와 MSN 플랫폼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청소년들이 주로 텍스트에 의존하는 이메일 대신, 음성전화에 근거한 텍스트 메시지를 주로 사용하면서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상에서의 텍스트 메시지 등이 주요한 사이버 왕따 도구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위협과 루머확산 등이 기존의 사이버 왕따 형태에 더해, 왕따 대상자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상에 게재하거나 해당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패러디해서 올리는 형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는 실제로 지난 2012년 10월 사이버 왕따로 자살을 한 당시 15세 소녀인 Amanda Todd 사건 이후 사이버 왕따에 대해 학교와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Amanda Todd는 자살 몇 년 전인 12살 당시에 온라인 화상 채팅으로 만난 남성의 코드김으로 인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노출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남성은 이 영상을 캡처해 Amanda를 협박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해당 영상을 페이스북등에 게재해 퍼뜨리겠다고 했으나, Amanda가 이를 듣지 않자, 실제로 해당 사진을 페이스북등을 통해 배포했다. Amanda는 이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었다. Amanda는 이후 왕따를 피하기 위해 캐나다 British Columbia (BC)주내 여러 학교로 전학을 다녔으나, 학교를 옮길 때마다 과거 행적이 알려져 왕따를 당하게 되었다.

Amanda는 2010년 9월에 유튜브에 My Story: struggling, bullying, suicide and self-harm이라는 3분 가량의 동영상을 올려 자신이 겪었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Amanda는 해당 영상에서 육성없이 자신이 왕따가 된 전후사정들을 적은 카드를 한장씩 보여주는 형식으로 자신이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지, 왜 학교가는 것을 두려워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외톨이가 되었는지와 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등을 설명하였다. 비디오의 마지막 부분에서 Amanda는, “나는 매일 내가 왜 아직 이곳에 있지? 나에겐 아무도 없다. 누군가가 필요해”라는 카드를 보여 줌으로써,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Amanda는 그러나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후 5주만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Amanda의 자살 당시 그녀가 유튜브에 올린 비디오 영상은 3,000여명 정도만이 보았으며, 이를 보고도 Amanda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움직임은 별로 없었다.

Amanda 자살 직후부터 그러나, 해당 영상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해 보게 되었으며, 2014년 7월 말 현재 전 세계에서 3천만 명 이상이 원본을 비롯한 관련 영상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캐나다는 물론 미국 등 서구 여러 국가에서 사이버 왕따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사이버 왕따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캐나다는 Amanda 등의 자살을 전후로 집중적으로 사이버 왕따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캐나다의 사이버 왕따 대책은 민간차원의 대책과, 정부차원의 대책, 그리고 교육을 통한 예방책 등이 그 핵심이다. 우선 민간차원의 대책으로, Amanda 등의 자살 이후 비영리단체인 Red Hood Project가 설립됐다. 청소년들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작된 해당 프로젝트는 인터넷 웹사이트, 페이스북과 트위터 페이지 등을 통해 사이버

왕따의 부당성을 알리고 해당 소셜미디어 회사들에게도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대책은 지방정부 차원과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각 마련되고 있다. 우선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Amanda 자살 직후 Erase Bullying Strategy 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육자들과 커뮤니티 관계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웹사이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익명으로 왕따와 학교 안전문제 등에 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청소년들이 잇따라 사이버 왕따로 인해 자살한 직후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의회는, 2013년 11월 사이버 왕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Bill C-13을 제정했다. 해당 법률은 위협적인 이미지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배포하는 행위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을 도구로 행해지는 사이버 왕따 행위를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그러나 2014년 6월 현재, 해당 법령을 강화, 경찰이 사이버 왕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왕따 가해자들의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 컴퓨터, 모바일 기기,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 원거리에서 해킹해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수정하고 있다. 법령이 통과되면 경찰은 사이버 왕따 가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의 전자장치에 바이러스 등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는 경찰이 가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얻고자 할 경우 모바일이나 랩탑 컴퓨터 등을 수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해당 법규들은 그러나, 사이버 왕따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전화통화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와 범죄수사 전문가들은 “반 사이버 왕따 규제가 지나치면 온라인상에서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법제적을 통한 규제보다는 교육을 통해 예방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이버 왕따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캐나다 Safe School Network의 Stu Auty회장은 “학교들이 왕따-자유 지역들을 더 확대해야 하며, 학생들이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을 통한 예방은 사이버 왕따 관련 법규를 통해 가해자들을 지나칠 정도로 범죄화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사이버 왕따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이와 관련된 피해를 청소년들이 일깨우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스스로 사이버 왕따를 회피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소셜미디어 시대 사이버 왕따에 대한 견해는 전문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소셜미디어 시대에 사이버 왕따를 방지하기 위해서 SNS등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충고는 사실상 가능한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 왕따 방지 전문가인 Molly Burke는 이와 관련, “사이버 왕따로부터 도망가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신뢰할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교를 바꾸고 새로운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SNS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받아들이지 말고, 감정적인 내용을 포스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부모들의 관심이 사이버 왕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 서베이 조사를 토대로 한 연구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인터넷사용에 있어 적게 관여할수록 자녀들이 사이버 왕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에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사이버왕따를 방지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소셜미디어가청소년들의문화, 특히 참여문화를 바꾸고 있는 가운데, 소셜 미디어의 부작용의 하나인 사이버 왕따는 결국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해증진, 소셜미디어 회사들의 체계적이고 안심할 수 온라인 시스템 구축,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교육 실시와 정부차원의 적절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정책토론회자료집 14-S42

온라인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School Cyberbullying(학교 인터넷따돌림) 실태와 대책방안

인 쇄 2014년 11월 1일

발 행 2014년 11월 3일

발행처 **윤재옥의원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인 윤 재 옥 · 노 혁

등 록 1995. 08. 31 제 301-2012-019호

인쇄처 동진문화사 전화 02)2269-4783 대표 이병무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